

農地所有의 變動에 관한 一考察, 1949~1968

—4 個地帶의 調査를 中心으로—

裴 茂 基

<目 次>	
I. 序 言	V. 移出農家の 農地所有變動과 移出行態
II. 階層別·營農種別 農地所有의 變動	VI. 新農地法의 主要規定에 대한 反應
III. 農地의 賣買에 關聯된 變動	VII. 結 語
IV. 地主小作關係와 小作條件의 變動	

I. 序 言

韓國農業은 1949年 6月에 農地改革法이 公布된 以來 벌써 20年의 歲月을 經過하였다. 農地改革이 農業生産力을 解放하고 農民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를 向上시키는 眞正한 改革的인 것으로 繼承될 수 있었다면 20年이 지난 오늘날의 農業은 生産力과 所得水準의 向上이 顯著하였을 것이며, 順調로운 農民의 分化·分解를 通하여 農業에 있어서도 資本制的 生産의 發展이 크게 進展되었을 것이다.

農地改革에서는 비록 그 事業實施가 不徹底하였지만 半封建的 地主·小作關係의 清算과 農民의 土地所有의 確立이라는 歷史的 意義는 充分히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農地改革後 20年이 經過한 現時點에서 볼 때 農業生産力의 革新的 向上을 通한 農業革命은 커녕 化學肥料의 增投에 의한 若干의 生産高増大를 除外하면 生産力의 發展은 거의 停滯狀態에 있으며 農家所得도 惡化一路에 있어 負債保有額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農業의 資本制的 發展도 一部 都市近郊의 商業的 農業을 除外하면 별다른 進展은 없고 오히려 前近代의 小作制度가 再生되고 있다.

이러한 韓國農業의 停滯의 原因은 한마디로 規定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低農產物價格 政策으로 農業部門이 계속 收奪되어 發展의 餘地를 갖지 못한 것이 가장 큰 原因이었던 것은 숨길 수 없는 事實이다. 農業의 停滯性이 經濟開發計劃에 있어서 成長의 隘路部門으로 登場하고 外穀에 대한 輸入需要가 急激히 擴大되자 最近 數年以來 政策當局의 主導下에

農業의 近代化 乃至 構造改善政策이 活潑히 論議되었으며, 그것이 農地改革法을 代置하는 新農地法案의 制定으로 歸結되었다. 그러나 現在 國會의 最終 審議를 기다리고 있는 農地法案은 農業停滯의 原因을 把握하는 態度에 있어서나 今後의 農業展開의 骨格을 이룰 農地制度의 規定에 있어서 매우 理解하기 어려운 思考를 하고 있다. 3町步 上限制가 農業發展에 現實의인 制約으로 되고 있다고 본다든지 企業農의 成立과 그 正常的인 發展을 樂觀한다든지 3町步 上限制 撤廢主張과 農地擔保의 許容 및 自營農規定에서 모든 農地의 流動化促進이 退行的인 結果를 招來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見解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思考方式은 韓國의 農業發展을 沮害하는 原因을 資本에 의한 農業의 壓迫·不等價交換에서 求하기 보다 오히려 3町步의 上限制約이 存在하기 때문에, 또는 類型別로 볼 때 企業農으로 育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把握하는데서 緣由한다. 換言하면 그와 같은 見解를 갖게 되는 것은 現實을 그렇게 把握하는데서 오는 當然한 歸結이며, 따라서 現實을 가장 正確하게 分析·把握하는 것이 第一次的으로 重要하게 된다.

本稿는 過去 20年間의 農地所有, 農地制度에 關聯되는 諸問題를 歷史的·系譜的으로 把握해 보기 위하여 試圖한 實際調查의 結果이다. 여기서는 階層別·營農種別 農地所有의 變動, 農地의 賣買에 關聯된 變動, 地主·小作關係와 小作條件의 變動 및 移出農家の 農地所有變動과 移出行態를 考察하고 特히 農民分解現象의 把握에 注力하였으며 新農地法의 主要規定에 대한 反應調查를 通하여 實際 農業을 擔當하는 農民의 意見을 綜合하고 新農地法의 構想과 比較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本稿에서는 農家를 固定, 移入, 移出, 出生農家の 四種으로 區分하였다. 固定農家란 農地改革以前⁽¹⁾부터 1968年 6月까지 同一部落內에서 農業에 從事하고 있거나 長子相續을 한 경우의 農家이며 移入移出農家란 1949年 6月~1968年 6月 期間中 外部地域으로부터 移入 또는 外部地域으로 移出한 農家를 말한다. 그리고 出生農家란 分家로서 獨立된 營農單位가 되거나 非農家가 農家로 誕生하는 경우이다. 本稿에서는 固定農家와 移出農家가 系譜的인 變動把握, 農民分解現象把握을 위하여 特히 重要視되었다.

調查의 對象地域은 地帶別로 平野地帶로서 全南 和順郡 綾州面 貫永里, 中間地帶로서 慶南 昌原郡 熊南面 木里, 山間地帶로서 慶南 陝川郡 大井面 回陽里 그리고 都市近郊地帶로서 慶南 金海郡 金海邑 興洞一區를 選定하였다. 各 地帶의 標本農家戶數는 貫永里가 48戶, 木里가 49戶, 回陽里가 50戶이며 興洞이 40戶이다. 標本農家의 抽出方法은 標本農

(1) 農地改革의 實施를 위하여 1949年 6月 21日 現在의 「農地改革을 위한 農家實態調查」를 行하였는 바 本稿에서의 農地改革以前은 1949年 6月 現在인,

家戶數보다 훨씬 많은 各 地帶別 部落에서 全國平均의 耕地規模階層別 農家構成比에 最大 限 接近되도록 各 階層別로 任意로 抽出하였다. 地帶別 各 部落의 性格을 간단히 살펴보면 平野地帶인 貫永里는 아주 넓은 平野는 아니지만 穀倉地帶인 湖南地方에 位置하고 水利施設도 比較的 整備되어 있어 平野地帶의 性格을 大體로 잘 나타내고 있다. 木里는 馬山과 鎭海等 中小都市에 比較的 近接해 있는 畚作為主의 中間地帶이다. 그리고 陝川郡의 回陽里는 山間 高地帶에 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亦是 畚作為 爲主이며 다른 地帶에 比하여 밭(田)이 相對的으로 많다. 金海邑 興洞은 金海平野에 位置하여 平野地帶이기도 하나 隣接地에 大都市인 釜山이 있고 果樹 園藝 高等蔬菜등 近郊農業이 典型的으로 發達된 地域이므로 여기서는 都市近郊地帶로 區分하였다. 調査는 1968年 7月 14日 부터 約 1週日間에 걸쳐 實施하였는데 標本農家로 選定된 調査對象農家 總 187戶(貫永里 40戶, 木里 49戶, 回陽里 50戶, 興洞 40戶)에 대하여는 世帶主와의 面接調査를 行하고 이 調査結果를 補完하기 위하여 다시 里長 또는 部落의 元老를 相對로 間接調査를 實施하

〈第 I-1表〉 標 本 農 家 概 況

區 分	貫永里	木 里	回陽里	興 洞	全 體	全國平均 ⁽²⁾	備 考
① 戶當 平均 耕地 面積	0.7 町步	1.01	1.01	0.73	0.87	0.91	全體는 加重平均
② 耕地規模別 農家 戶數	戶 %					%	
大 農(2.0町步 以上)	2(4.0)	6(12.2)	4(8)	2(5.0)	14(7.5)	6.8	
中 農(1.0~2.0町步)	9(18.8)	17(34.7)	21(42)	7(17.5)	54(29.0)	25.8	
小 農(0.5~1.0町步)	19(39.6)	10(20.4)	22(44)	15(37.5)	66(35.2)	32.2	
細 農(0.5町步未滿)	18(37.5)	16(32.7)	3(6)	16(40.0)	53(28.3)	35.2	
計	48(100)	49(100)	50(100)	40(100)	187(100)	100.0	
③ 戶當 平均 家口員數 (營農從事者數)	7.3人 (2.7)	6.9 (4.2)	6.9 (4.2)	6.2 (2.9)	6.6 (3.4)	6.22 (3.12)	全體는 加重平均
④ 負債保有農家戶數	28(58.3) 戶 %	31(63.3)	36(72)	25(62.5)	120(64.0)		
⑤ 戶當 平均 保有負債額	21,000원	14,739	18,150	24,055	22,346	9,986	全體는 加重平均
⑥ 負債保有農家 平均負債額	36,556원	23,297	25,208	38,488	29,848		"
⑦ 固定, 出生, 移入農家戶數	戶				%		
固 定	32	38	42	34	146(78.1)		
出 生	7	9	6	2	24(12.8)		
移 入	9	2	2	4	17(9.1)		
計	48	49	50	40	187		
⑧ 移出 農家 戶數	27	19	21	13	80		

註 (1) 回陽里의 超大規模農家 1戶(總農耕地 22,000 坪)는 除外하였음.

(2) 全國平均値는 1966 年度分임. (農協中央會, 『農業年鑑』, 1967)

였다. 그리고 移出農家에 대한 調査는 調査對象農家が 移出하고 없으므로 亦是 里長등 部落의 數名の 元老를 相對로 하는 間接調査方法을 使用하여 別途로 實施하였다.

여기서 標本農家の 概況을 살펴보면 <第 I-1表>와 같다. 먼저 各 調査地域別 戶當 平均 耕地面積은 木里 및 回陽里가 各各 1.01 町步로서 全國平均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耕地規模別 農家戶數의 構成에 있어서 中農 및 大農階層이 全國 平均보다 높도록 標本農家가 選定된데 基因한다. 全體 耕地規模別 農家戶數의 構成은 全國 平均과 對比할 때 若干 畝의 差異는 있지만 大體로 接近되고 있다. 그리고 負債에 關聯된 事項은 먼저 負債保有 農家戶數에 있어서는 負債保有事實을 公開하기를 기피하는 傾向이 있어 全體 標本農家の 64%에 해당하는 120 戶가 負債를 保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戶當 平均 保有負債額은 全體 平均 22,346 원이며 負債保有農家の 平均負債額은 29,848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標本農家の 固定, 出生, 移入農家別 區分을 보면 固定農家が 146 戶로서 全體의 78.1%, 出生農家が 24 戶로 12.8%, 移入農家が 17 戶로 9.1%를 占하고 있다. 이 밖에 農地改革 以後 1968年 6月末까지의 사이에 各 調査地域으로부터 移出한 農家は 貫永里에서 27 戶, 木里에서 19 戶, 回陽里에서 21 戶, 興洞에서 13 戶를 各各 찾아낼 수 있었는데 調査對象者 (在村元老)들의 記憶力이 地域別로 均一하지 못하고 또한 거의 20年間을 遡及하는 調査이므로 自然히 漏落되는 것도 많을 것으로 豫想되어 部落戶數와 移出農家戶數의 對比등은 避하고 比較的 仔細하게 資料가 蒐集된 移出農家の 所有農地의 變動狀態, 移出의 原因 및 形態등에 調査의 焦點을 集中시켰다. 移出農家の 移出以前의 長期的인 農地所有의 變動狀況과 移出原因, 移出地, 移出後의 就業狀態등을 結付시킨 調査는 以前에 별로 試圖된바 없는 調査로서 離農行態에 대한 몇가지 事實을 示唆하고 있다.

이런의 調査는 約20年間의 農地所有에 대한 變動調査에 主眼을 두었지만 現在 農地制度에 대하여는 新農地法을 通하여 重大한 變化가 加해질려고 하므로 農地法中 現行農地改革法의 基本的 趣旨와 다른 主要規定에 대하여는 그 反應을 調査하였다. 이러한 調査結果를 分析한 後 끝으로 本稿의 結語로서 몇몇 側面의 調査를 通하여 나타난 結果를 全體의 으로 綜合하여 農地 制度의 改革方向에 대한 몇가지 問題點을 指摘코자 한다.

II. 階層別·營農種別 農地所有의 變動

1. 時期別 階層別 農地所有의 變動

<第 II-1表>는 時期別 耕作規模階層別 農地所有의 變動狀況을 나타낸 것이다. 4 個地帶에

있어서 各 時期別⁽²⁾・階層別 構成比를 볼 때 우선 하나의 特徵的인 現象은 1955年 6月의 大農構成比가 그 前後의 時期에 比하여 顯著하게 낮은 點이다. 그것은 大農階層이 農地改革으로 相對的 構成比가 크게 떨어졌다가 12年이 經過한 現在 그 構成比가 다시 增加하였음을 말해 준다.

<第Ⅱ-1表> 時期別 耕地規模階層別 農家構成

時期別 階層別	貫 永 里						木 里						回 陽 里					
	農地改革前 (1949. 6)		農地改革後 (1955. 6)		現 在 (1968. 6)		農地改革前 (1949. 6)		農地改革後 (1955. 6)		現 在 (1968. 6)		農地改革前 (1949. 6)		農地改革後 (1955. 6)		現 在 (1968. 6)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大 農	2	6	1	3	2	4	2	5	1	3	6	12	4	10	1	2	4	8
中 農	5	16	8	21	9	19	16	42	19	48	17	35	10	24	9	21	21	42
小 農	12	38	15	39	19	40	10	26	5	13	10	20	16	38	18	41	22	44
細 農	11	34	13	33	18	38	9	24	12	30	14	29	11	26	15	34	3	6
無	2	6	2	5	0		1	3	3	8	2	4	1	2	1	2	0	
計	32	100	39	100	48	100	38	100	40	100	49	100	42	100	44	100	50	100

時期別 階層別	興 洞						全 體					
	農地改革前 (1949. 6)		農地改革後 (1955. 6)		現 在 (1968. 6)		農地改革前 (1949. 6)		農地改革後 (1955. 6)		現 在 (1968. 6)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大 農	3	9	2	6	2	5	11	7	5	3	14	8
中 農	17	49	14	40	7	18	48	33	50	32	54	29
小 農	7	20	10	29	15	38	45	31	48	30	66	35
細 農	4	14	6	17	14	35	35	24	46	29	49	26
無	3	8	3	9	2	5	7	5	9	6	4	2
計	34	100	35	100	40	100	146	100	158	100	187	100

即 調查地域全體에 있어서 大農階層은 農地改革前에 7%이던 것이 農地改革後에 3%로 떨어졌다가 다시 現在에는 8%로 上昇하고 있다. 그러나 大農이라 하여도 不過 2町步 以上の 階層이며, 1~2町步階層인 中農의 構成比는 農地改革前의 33%에서 農地改革後와 現在에 各各 32%와 29%로 떨어지고 있으므로 大農階層의 構成比가 上昇하고 있는 것을 바로 農地의 集中 乃至 兼併現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여기서 時期를 農地改革前(1949年 6月)과 現在(1968年 6月)를 擇한 外에 1955年 6月을 다시 區分한 것은 1955年이 비록 實際로 完了된 것은 아니지만 農地改革 實施에 있어서 分配農地에 대한 償還完了豫定の 래였으며, 償還은 完了되지 않았더라도 農地所有關係는 이미 一段落되고 오히려 若干의 變動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時期를 本稿에서는 便宜上 農地改革後라고 하였다.

다른 하나의 特徵은 1町步未滿(表에서의 小農以下)의 農家戶數의 構成比이다. 4個地域全體로 본 小農의 構成比는 各 時期에 있어서 31%, 30% 및 35%이다. 그리고 細農은 24%에서 29%로, 다시 26%로 變化하였다. 農地가 없는 非農民은 이 調査의 性格上 제대로 把握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1町步未滿 階層은 農地改革以前에 比하여 1968年 6月末現在 오히려 構成比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地域別로는 金海邑 興洞이 農地改革前의 42%에서 現在에 78%로 가장 甚하게 增加하였으며 木里와 貫永里가 큰 變動이 없는데 대하여 陝川郡의 回陽里는 66%에서 50%로 오히려 크게 줄었다. 如何間全體로서는 小農 및 細農階層이 모두 늘어났는데 이와같이 中農의 構成比가 20年間 줄어들고 小細農階層이 늘어난 것은 日本等地의 中農肥大化現象과는 對照的 現象이라고 하겠다.

2. 期間別 階層別 農地所有의 變動

一定期間에 있어서의 農地所有의 變動樣式 또는 農民分解現象을 正確히 把握하기 위해서는 그 期間이 比較的 長期인 경우 泡沫의인 出生 또는 移入農家에 의한 攪亂을 可及의 除去하여야만 한다. 그리하여 一定期間中 一定數의 農家에 대하여 그 階層別 構成이 如何히 變化하는가를 계속 觀察할 必要가 있다.

〈第Ⅱ-2表〉에서는 期間區分을 ㉠農地改革前에서 改革後인 1949年 6月~1955年 6月, ㉡農地改革後에서 現在 即 1955年 6月~1968年 6月, 그리고 ㉢農地改革前에서 現在인 1949年 6月~1968年 6月の 세가지로 하였다. 그리고 階層區分은 前과 같이하여 하나의 階層이 各各의 期間中 어떤 階層으로 變動하였는가를 表示하였다. 여기서 各 地域別 變動狀況은 度數가 높지 않으므로 別途로 다루지 않고 各 階層別로 全體의 變動을 보던 다음과 같다.

먼저 農地改革前의 大農은 ㉠期間中の 6年間에 11戶中 大農으로 5戶가 그대로 남고 中農으로 4戶, 小農, 細農으로 各各 1戶로 階層이 分化되었다. 그리고 ㉡의 期間中에는 大農으로 3戶가 그대로 남고 中農으로 2戶가 變動하였다. 따라서 農地改革前과 現在間의 變動인 ㉢의 期間中에는 變動前의 大農 11戶가 大農으로 3戶(27%), 中農으로 4戶(36%), 小農으로 4戶(36%)가 變動하여 滿19年間に 大農中の 27%만이 大農階層을 그대로 維持하고 나머지 73%는 中農과 小農으로 各各 階層下降變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農地改革前의 中農 48戶는 ㉠의 期間中 77%인 37戶가 中農으로 그대로 남고 17%인 8戶가 小農으로, 6%에 해당하는 3戶가 細農으로 各各 變動하였다. 그리고 ㉢期間에는 農地改革前의 同一한 農家(中農) 48戶가 大農으로 6戶(12%), 中農 그대로 21戶(44%),

固定農家の 期間別 階層別 變動 (1)

(單位: 戶)

<第 II-2表>

變動區分	期間	貴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農地改革前			農地改革後			農地改革前			農地改革後			A		B		C				
		1949.	1955.	1966.	1949.	1955.	1966.	1949.	1955.	1966.	1949.	1955.	1966.	1949.	1955.	1966.	戶數	%	戶數	%	戶數	%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大農	變動前	1	1	1	1	—	—	1	1	1	2	1	1	5	46	3	60	3	27			
	變動後	1	—	—	—	1	1	2	—	2	1	1	1	4	36	2	40	4	36			
	大農	—	—	1	1	—	1	—	—	1	—	—	1	1	9	—	—	4	36			
	中農	—	—	—	—	—	—	1	—	—	—	—	—	1	9	—	—	—	—			
	小農	—	—	—	—	—	—	—	—	—	—	—	—	—	—	—	—	—	—			
中農	變動前	—	1	1	—	5	4	—	—	—	—	1	1	—	—	7	14	6	12			
	變動後	4	2	1	15	11	9	6	7	8	12	3	3	37	77	23	47	21	44			
	大農	1	3	3	—	1	1	3	2	2	4	7	9	8	17	13	26	15	31			
	中農	—	1	—	1	1	1	1	—	—	1	3	4	3	6	5	10	5	10			
	小農	—	—	—	—	1	1	—	—	—	—	—	—	—	—	1	3	1	2			
小農	變動前	—	—	1	—	—	1	—	1	1	—	—	—	—	—	1	2	3	7			
	變動後	2	2	—	3	1	3	1	9	5	—	—	—	6	13	12	28	8	18			
	大農	10	8	7	4	4	4	11	6	9	5	5	2	30	67	23	52	22	49			
	中農	—	3	4	2	—	1	3	1	1	1	3	4	6	13	7	16	10	22			
	小農	—	—	—	1	—	1	1	—	—	1	1	1	3	7	1	2	2	4			
細農	變動前	—	—	—	—	—	—	—	2	1	—	—	—	—	—	2	5	1	3			
	變動後	—	1	2	1	3	3	—	3	4	—	—	—	1	3	7	17	9	26			
	大農	2	2	2	—	3	2	3	8	5	—	1	—	5	14	14	34	9	26			
	中農	9	7	7	8	5	4	8	1	1	3	5	3	28	80	18	44	15	42			
	小農	—	—	—	—	—	—	—	—	—	1	—	1	1	3	—	—	1	3			
無	變動前	—	—	—	—	—	—	—	—	1	—	—	—	—	—	—	—	—	1	14		
	變動後	—	—	1	—	—	—	—	—	—	1	1	1	1	14	1	14	2	28			
	大農	—	—	—	—	—	—	—	—	—	—	—	—	—	—	1	14	1	14			
	中農	1	1	1	—	1	1	—	—	—	1	1	1	3	43	3	43	3	43			
	小農	1	—	—	1	1	—	—	—	—	1	1	—	3	43	2	28	—	—			
計		32	32	32	38	38	38	42	42	42	34	34	34	146		146		146				

小農으로 15戶(31%), 細農으로 5戶(10%), 農地없는 農家로 1戶(2%)씩으로 各各 變動하였다. 그리하여 中農階層으로 남은 44%를 除하면 階層上昇한 農家가 12%, 階層下降한 農家가 43%를 占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農地改革前의 中農은 滿 19年이 지난 現在 階層上昇한 農家보다도 下降한 農家가 31포인트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農地改革前의 小農 45戶는 ㉠의 期間中에 이미 6戶(13%)가 中農으로 階層上昇하

있고 小農 그대로가 30戶(67%), 細農으로 6戶(13%), 農地없는 農家로 3戶(7%)로 各 各 變動하였다. 그리고 同一한 小農 45戶가 19年間인 ㉠의 期間中에는 大農으로 3戶(7%), 中農으로 8戶(18%)로 上昇하고 小農階層에 그대로 殘存한 것이 22戶(49%)이며 細農으로 10戶(22%), 農地없는 農家로 2戶(4%)가 各 各 下降變動하였다. 그리하여 小農階層을 中心으로 볼 때 大農 및 中農으로 階層上昇을 한 農家は 19戶에 25%, 細農 및 無農地로 階層下降한 것은 12戶에 26%로 上昇 및 下降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細農 35戶는 ㉠의 期間中에 中農으로 1戶(3%), 小農으로 5戶(14%)가 階層上昇을 하고 28戶(80%)가 細農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無農地로 1戶(3%)가 下降하였다. 中農에서는 ㉠期間의 6年中에 階層上昇한 農家가 없었음에 대하여 小農 및 細農에서는 同期間中에도 階層上昇의 現象이 보이는데 그것은 農地改革이 農地가 없는 農民 또는 不足한 農民에게 3町步를 超過한 農家の 農地를 分配하여 주었기 때문에 農地가 不足한 小, 細農이 農地改革過程에서 農地를 擴張시킨 事實이 表現된 것으로 보인다. ㉠의 期間中에는 大農으로 1戶(3%), 中農으로 9戶(26%), 小農으로 9戶(26%)씩 各 各 階層上昇을 하고 細農 그대로에 15戶(42%), 無農地 1戶(3%)로 變動하였다. 따라서 細農은 滿19年間に 全體의 56%나 階層上昇을 하고 42%가 不變이고 3%가 下降變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農地없는 農家도 ㉠期間中에 大農으로 1戶(14%), 中農으로 2戶(28%), 小農으로 1戶(14%) 및 細農으로 3戶(43%)씩 各 各 變動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考慮해야 할 點은 本 調査에서의 對象農家中 固定農家は 不過 4戶의 農地없는 農家(事實上 非農家)를 除外하고는 現在에 細農以上の 農家이므로 <第Ⅱ-2表>로서는 農民分解 現象中 階層上昇이나 細農程度까지의 下降은 大體로 把握이 될 수 있지만 完全히 農家에서 脫落한 農家は 제대로 把握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19年前의 各階層의 變動을 表示는 해 주되 標本自體가 19年間の 變動結果 脫落되지 않은 農家로서 大部分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特히 小農, 細農 및 無農地階層에서 豫想되는 非農民化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階層上昇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缺陷은 調査의 困難 때문에 標本農家選定을 19年前을 基準으로 無作爲抽出하지 않고 現在의 農家를 遡及하여 調査하였기 때문에 結果된 것이다. 따라서 表에 나타난 農民分解도 當然히 그만큼의 制約을 받아 階層下降運動은 잘 說明해 주지 못한다³⁾. 그 結果 <第Ⅱ-2表>는 大農 및 中農階層에서 無農地階層으로의 下降이 매우 드물 것이라고 假定할 때 過去의 大農, 中農階

(3) 階層下降變動은 本稿의 V. 移出農家の 農地所有變動과 移出行態를 參照할 것.

層의變動은事實과 큰差異없이表示해 주되 小農階層의變動은上昇과下降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下降運動이相當히 過少評價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細農以下의階層에 대하여는 그 信賴度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다음 <第 II-3表>는 <第 II-2表>에서 ©期間分만 拔萃한 것으로 現在의 各階層이 農地改革前의 如何한 階層에서變動된 것인가를 나타낸다.

大農에 있어서는 農地改革前부터의 大農은 3戶(21%)뿐이고 中農으로부터變動된 것이 6戶(44%), 小農으로부터 3戶(21%), 細農 및 無農地로부터 各各 1戶(7%)씩이變動된

<第 II-3表> 固定農家の階層別變動(2) (農地改革前~現在 ©)

農地改革前의 階層	大 農		中 農		小 農		細 農		無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大 農	14(9%)	100	3	21	6	44	3	21	1	7	1	7
中 農	44(30)	100	4	9	21	48	8	18	9	20	2	5
小 農	51(35)	100	4	8	15	29	22	43	9	18	1	2
細 農	33(23)	100	—	—	5	15	10	30	15	46	3	9
無	4(3)	100	—	—	1	25	2	50	1	25	—	—
計	146(100)	100	11	7	48	33	45	31	35	24	7	5

것임을 나타낸다. 即 21%의 農家가 過去부터의 大農이고 나머지 79%는 中農以下에서 各 各 階層上昇한 것이다. 그리고 現在의 中農層 44戶는 21戶(48%)가 過去의 中農이 그대로 維持된 것이고 4戶(9%)는 大農에서 下降하고 그 나머지 19戶(43%)는 各各 小, 細, 無農階層에서 上昇한 것임을 보여준다. 即 現在의 中農은 階層下降이 9%, 同等規模維持가 48%, 階層上昇이 43%이다. 따라서 大農과 中農에 대하여는 階層上昇運動이 比較的 活潑히 展開된 結果라고 할 수 있다.

다음 現在의 小農은 大農이던 것이 4戶(8%), 中農 15戶(29%) 合計 37%가 階層下降하고 同一階層維持가 22戶(43%)이며 細農에서 9戶(18%), 無農地에서 1戶(2%)로 階層上昇 合計 21%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小農은 階層上昇보다도 下降이 17%포인트 높게 그만큼 많은變動要素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現在의 細農 33戶는 中農에서 5戶(15%), 小農에서 10戶(30%) 合計 45%만큼 階層下降을 하고 同一階層維持가 15戶에 46%이며 無農地階層에서 3戶(9%)가 上昇한 結果이다.

그리고 現在의 無農地階層은 前述한 바와 같이 本 調査에서 例外的으로 들어가게 된 4戶에 대하여 볼 때 各各 中, 小, 細農에서 階層下降運動을 한 結果임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全體 146戶의 固定農家로서는 그 構成이 農地改革前에 比하여 大農階層과 小

農階層이 若干씩 增加하였고 中農, 細農, 및 無農地階層이 各各 조금씩 減少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時期別 營農種別 農地所有의 變動

前記 階層別 農地所有變動에서와 같은 3時點에 있어서의 地主, 自作, 自小作, 小作 및 無農地로 區分한 營農種別 農地所有의 變動狀況을 나타낸 것이 <第Ⅱ-4表>이다.

우선 地域別 特徵을 보면 다음과 같다. 貫永里는 農地改革前에 自作農이 75%, 自小作이 13%이던 것이 改革後에는 오히려 前者의 構成比가 減少하고 後者가 增大하였으며 現在에는 다시 過去의 地主 또는 小作階級이 없어지고 自作 75%, 自小作 25%로 自小作이 改革前에 比하여 12% 포인트 增大하였다. 木里는 農地改革前에 自作 32%, 自小作 55%, 小作 11% 등이던 것이 農地改革의 結果 自作農이 急激히 增加하여 83%로 되고 反面 自小作은 13%로 減少하였다. 그리고 現在에는 自作 65%, 自小作 31%로 다시금 自作農의

<第Ⅱ-4表> 時期別 營農種別 農家構成

營農種別	貫		永		里		木		里		回		陽		里			
	農地改革前 (1949. 6)		農地改革後 (1955. 6)		現在 (1968. 6)		農地改革前 (1949. 6)		農地改革後 (1955. 6)		現在 (1968. 6)		農地改革前 (1949. 6)		農地改革後 (1955. 6)		現在 (1968. 6)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地主	1	3	1	3	0	0	0	0	0	0	0	2	5	0	0	4	8	
自作	24	75	26	67	36	75	12	32	33	83	32	65	26	62	37	84	28	56
自小作	4	13	9	23	12	25	21	55	5	13	15	31	6	14	4	9	16	32
小作	1	3	1	3	0	0	4	11	0	0	0	0	7	17	2	5	2	4
無計	2	6	2	5	0	0	1	3	2	5	2	4	1	2	1	2	0	0
計	32	100	39	100	48	100	38	100	40	100	49	100	42	100	44	100	50	100

營農種別	興			洞			全體					
	農地改革前 (1949. 6)		農地改革後 (1955. 6)		現在 (1968. 6)		農地改革前 (1949. 6)		農地改革後 (1955. 6)		現在 (1968. 6)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地主	0		0		0		3	2	11	(0.6)	4	2
自作	6	18	26	74	36	90	68	47	122	77	132	71
自小作	11	32	2	6	2	5	42	29	20	13	45	24
小作	15	44	4	11	0	0	27	19	7	4	2	1
無計	2	6	3	4	2	5	6	4	8	5	4	2
計	34	100	35	100	40	100	146	100	158	100	187	100

構成比는 줄어들고 小作을 兼하는 自小作形態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回陽里는 木里와 거의 類似한 形態로 變動하여 改革前에 地主 5%, 自作 62%, 自小作 14%, 小作 17% 등이

던 것이 改革後에는 自作農이 壓倒的인 比重을 占하여 84%로 되고 自小作 및 小作은 9%, 5% 등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現在에 이르러서는 陰性的인 地主·小作關係가 再生하여 地主가 8%로 登場한 反面 自作은 56%로 改革後보다 28% 포인트나 減少하였고 自小作은 23% 포인트나 增加하였다. 金海邑 興洞은 農地改革前에 自作農 18%, 自小作 32%, 小作 44% 등 相當히 自小作 및 小作形態가 甚한 樣相을 보였으나 改革의 結果 自作 74%, 自小作 6%, 小作 11% 등으로 크게 好轉되었는데 그위에 다시 木里나 回陽里 等地와는 달 리 現在에는 自作農이 90%, 自小作이 5%이며, 小作은 全無하게끔 獨特하게 變動하였다.

그리하여 全體로서 보면 農地改革前에는 地主, 小作關係가 強하였으므로 地主 2%, 自作 47%, 自小作 29%, 小作 19%, 無 4% 등 營農種別로 매우 分散되어 있었으나 農地 改革의 結果 自作農이 77%로 顯著히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되고 自小作이 13%, 小作이 4%, 地主가 0.6%로 各各 減少하였다. 그리고 現在에는 改革後에 比하여 自作이 6% 포인 트 減少한 71%임에 대하여 自小作은 11% 포인트가 오히려 增加하여 小作關係의 再生傾向 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3時點間에는 農地改革前에서 改革後의 期間사이에는 改革의 惠澤으로 農地所有關係가 分明히 進歩한 것이지만 改革後 現在에 이르는 期間동안에 는 오히려 否定的인 要素가 強化되어 歷史적으로 退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期間別 營農種別 農地所有의 變動

앞서 階層別 農地所有의 變動을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基準으로 區分한 3期間別 營農 種別(階級別)農地所有의 變動을 表示한 것이 <第Ⅱ-5表>이다.

營農種別에 대해서도 地域別로 考察하지 않고 各 營農種別 全體로 보면 다음과 같다.

地主階級은 ㉠의 期間中에 1戶가 地主로 그대로 남고 2戶가 自作農으로 되었다. 그리고 ㉡의 期間中에는 1戶이던 地主가 自作農으로 되었으며, ㉢의 期間中 即 農地改革前에 서 現在에 이르는 期間中에 3戶 모두가 自作農으로 轉化하였다.

自作農階級은 農地改革前에 68戶이던 것이 ㉠의 期間中 90%에 해당하는 61戶는 그대로 自作農으로 남고 10%인 7戶가 自小作으로 下降變動하였다. 그러나 農地改革의 結果 自作農이 많이 創出되었으며 改革後인 1955年 6月에는 全體 146戶의 固定農家中 75%에 該當하는 110戶가 自作農이었다. 그런데 이 110戶는 ㉡의 期間中 地主階級으로 5戶(5%), 自作農 그대로 73戶(66%), 自小作으로 30戶(27%), 그리고 小作農 및 無農地로 各各 1戶(1%)씩 變動하였다. 그리고 ㉢의 期間中에는 ㉠期間中에 分解現象이 크게 나타나지 않

<第Ⅱ-5表>

固定農家の 期間別 營農種別 變動 (1)

(單位: 戶)

期間 變動 區分	區分	貫 永 里			木 里			回 陽 里			興 洞			全 體						
		農地改 革前 (1949.5.6)	農地改 革後 (1955.6.6)	農地改 革前 (1949.8.6)	農地改 革前 (1949.8.6)	農地改 革前 (1949.8.6)	農地改 革前 (1949.8.6)	農地改 革前 (1949.8.6)	農地改 革前 (1949.8.6)	農地改 革前 (1949.8.6)	農地改 革前 (1949.8.6)	農地改 革前 (1949.8.6)	農地改 革前 (1949.8.6)	A		B		C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地 主	地 主	1											1	33						
	自 作		1	1				2	2				2	67	1	100	3	100		
	無																			
自 作	地 主							4	3		1					5	5	3	4	
	自 作	18	19	18	12	12	6	26	21	16	5	21	6	61	90	73	66	46	68	
	無	6	2	6		17	6		10	6	1	1	7	10	30	27	18	27		
自 小 作	地 主																		1	2
	自 作	2	2	2	15	1	4	3	3	4	8	3	9	28	66	9	41	19	46	
	無	2	6	2	6	5	16	3	1	2	3	1	1	14	34	13	59	21	51	
小 作	地 主	1		1	3		2	4		3	9	1	10	17	63	1	14	16	59	
	自 作		1				1	1		3		1	1	3	2	29	4	15		
	無				1		1	1	1	1	4	2	3	5	19	3	43	4	15	
無	地 主									1									1	17
	自 作		1	2		1	1	1	1		1	1	1	2	33	3	50	2	33	
	無	1											1	2	33			3	50	
計		32	32	32	38	38	38	42	42	42	34	34	34	146		146		146		

앞에 比하여 農民分解가 훨씬 進展되어 總 68戶 中 地主로 3戶(4%), 自作農 그대로에 46戶(68%), 自小作에 18戶(27%) 및 小作 1戶(1%)로 各各 變動하였다.

다음 自小作階級⁽⁴⁾은 ④의 期間中에는 總 42戶中 28戶(66%)가 自作農으로 上昇轉化되고 나머지 14戶(34%)가 自小作 그대로 殘留하여 農地改革直後에는 過半數가 自作農으로

(4) 오늘날은 過去 農地改革前에 比하여 自作農과 自小作農과를 區分하는 意味는 많이 減少되었지만 本稿에서는 一旦 區分하였음.

轉化했음에 대하여 ㉑의 期間中에는 總 22 戶中 9 戶(41%)가 上昇하고 13 戶(59%)가 그대로 自小作으로 남아 農地改革의 時點에서 떨어질 수록 自作農化가 衰退함을 보여 준다. 그리고 ㉒의 期間中에는 農地改革前의 42 戶가 滿 19 年만에 地主로 1 戶(2%), 自作農으로 19 戶(46%), 自小作 그대로에 21 戶(51%), 無農地로 1 戶(2%)적으로 各各 變動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㉑期間中の 變動과 比較해 보면 매우 興味있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으니 ㉑의 期間中인 6 年동안에 28 戶(66%)가 自作農으로 上昇하였지만 이들은 13 年동안에 28 戶中 1 戶가 地主階級으로, 19 戶가 自作農을 그대로 維持하고 나머지 8 戶는 다시 自小作으로 떨어지고 있다. 卽 1949 年 6 月의 農地改革前을 始點으로 할 때 1955 年 6 月까지는 自小作이 自作으로 되는 上昇變動이 變動의 主流을 이루었고 1955 年 6 月 以後 現在에 이르는 동안에는 反對로 上昇했던 自作이 自小作으로 다시 下降變動한것이 變動의 主流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小作과 無農地階級은 前記 Ⅱ의 2)에서 밝힌 바와 같이 標本이 階級下降보다도 上昇이 過大評價되어 있어 上位階級에서 보다도 妥當性이 훨씬 떨어진다. 이들은 小作에서의 例外的인 3 戶를 除外하면 19 年間 非農家(無農地)로 脫落하지 않은 小作農의 營農種別 變動을 말해줄 뿐이다. 表에 의하면 農地改革前의 小作農 27 戶는 ㉑의 期間中에 自作으로 17 戶(63%), 自小作으로 1 戶(3%) 上昇하고 小作그대로에 5 戶(19%)이며 4 戶(15%)가 無農地로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構成比는 ㉒의 期間으로 보아도 大體로 類似하지만 標本設計 自體가 上昇變動이 過大評價되었으므로 實際로는 自作 및 自小作으로의 上昇은 表上의 16 戶(59%), 4 戶(15%)보다는 적고, 그리고 小作 및 無農地는 4 戶(15%), 3 戶(11%)보다 많다고 推斷할 수 있다.

農地改革前의 無農地 6 戶는 ㉑期間中 自作으로 2 戶, 小作으로 2 戶씩 上昇하고 無農地에 2 戶가 殘留하였다. 그리고 ㉒期間中에는 地主 1 戶, 自作 2 戶, 自小作 3 戶적으로 上昇하였는 바 여기서도 上昇變動이 過大評價된 것은 다름이 없다.

다음 <第 Ⅱ-6表>는 現在의 營農種別(階級別) 各 農家が 農地改革前의 어떠한 階級에서 變動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第 Ⅱ-5表>의 全體中 ㉒期間分만 拔萃한 것이다.

表에 의하면 現在의 地主 5 戶는 改革前의 自作에서 3 戶, 自小作에서 1 戶 그리고 無農地에서 1 戶가 上昇한 것이다. 現在의 自作農 86 戶는 改革前의 地主에서 3 戶(4%)가 下降하고 46 戶(53%)가 그대로 自作農으로 不變이었으며 나머지는 自小作에서 19 戶(22%), 小作에서 16 戶(19%), 無農地에서 2 戶(2%)가 上昇하여 된 것이다. 自小作은 39%인 18

<第Ⅱ-6表>

固定農家の 營農種別 變動 (2)

(農地改革前~現在, ©)

變動前の 營農種別 現在の 營農種別	地 主		自 作		自 小 作		小 作		無			
	戶 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地 主	5(4)	100	—	0	3	60	1	20	—	0	1	20
自 作	86(59)	100	3	4	46	53	19	22	16	19	2	2
自 小 作	46(31)	100	—	0	18	39	21	46	4	9	3	6
小 作	5(4)	100	—	0	1	20	—	0	4	80	—	0
無	4(3)	100	—	0	—	0	1	25	3	75	—	0
計	146(100)	100	3	2	68	47	42	29	27	18	6	4

戶가 自作에서 下降하고 46%인 21戶가 그대로이며 나머지 15%는 小作에서 9%(4戶), 與農地에서 9%(3戶)가 各各 上昇한 것이다. 小作農은 度數가 너무 작아 意味를 賦與하기 에 無理가 많지만 表에 의하면 自作에서 1戶가 下降하고 小作 그대로가 4戶이다.

따라서 表에 나타난 大體的인 傾向을 찾아본다면 現在の 地主는 모두 階級上昇의 結果이며 自作農은 自作 自體도 많이 殘留하였거니와 上下階級에서의 自作農化 傾向도 높아 서 크게 늘어난 點, 自小作에는 上昇 보다도 下降變動이 더 크게 寄與한 點, 地主階級이 改革前에 比하여 늘어난 點, 自作農과 自小作이 增加한 反面 純粹한 小作農이 減少된 點 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小作이 大幅 減少하고 自作이 增加한 것은 農地改革의 基本方向이 그곳에 있었으므로 當然한 것이지만 地主와 特히 自小作이 改革前에 比하여 增加한 것은 農地所有變動의 否定的 側面이 露呈된 것으로 보아도 無理가 없을 것 같다.

III. 農地의 賣買에 關聯된 變動

1. 農地의 賣却

農地가 農民에게 대하여 가장 重要한 또는 거의 唯一한 生産手段이란 意味에서 農地의 賣買는 그것이 肯定的인 側面에서 이루어졌던 혹은 否定的인 側面에서 不可避的으로 이루어 졌던간에 매우 重大한 事實이며 農地賣買에 關聯된 事項을 通하여 農地所有變動에 대 한 많은 事實을 엿볼 수 있다. 本節에서는 農地의 賣却事實 與否, 農地賣却時期, 農地賣却理由, 農地賣却希望與否, 賣却希望者의 理由 등을 考察한다.

먼저 農地賣却事實 與否에 대하여 보면 20年間に 農地를 賣却한 事實이 있는 農家는 全體의 總 187戶中 112戶로서 約 60%를 占한다. 그리고 階層 各各을 100으로 한 構成比

<第Ⅲ-1表>

階層別 農地賣却事實 與否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 다		없 다	
									戶數	%	戶數	%
大 農 (100.0)		2	5	1	3	1	1	1	9 (64.3)	8.0	5 (35.7)	6.6
中 農 (100.0)	5	4	8	9	15	6	4	3	32 (59.3)	28.5	22 (40.7)	29.3
小 農 (100.0)	13	6	5	5	12	10	8	7	38 (57.6)	33.9	28 (42.4)	37.4
細 農 (100.0)	10	8	7	9	3	0	13	3	33 (62.3)	29.6	20 (37.7)	26.7
計 (100.0)	28	20	25	24	33	17	26	14	112 (59.9)	100.0	75 (40.1)	100.0

를 보면 賣却事實이 있다에서 大農은 64.3%로 가장 높고, 다음이 細農으로 62.3%, 그 다음이 中農 59.3%, 小農 57.6%의 順이다. 即 大農과 細農의 兩端階層이 農地賣却事實이 많고 中農과 小農이 相對적으로 적은 것이다. (<第Ⅲ-1表>)

다음 農地의 賣却時期를 나타내는 것이 <第Ⅲ-2表>이다. 賣却時期는 農地를 賣却한 事實이 있는 農家中에서 賣却時期에 應答한 78戶에 대하여 表와 같이 4時期로 區分하였다. 全體 78戶中 1950~55年의 6年間に 農地를 賣却한 農家は 15戶로서 每年平均 2.5戶이며 1956~60年間은 25戶에 每年 平均 5戶, 1961~65年間은 23戶에 4.6戶이고 1966~68年 6月間은 15戶로서 每年 平均 6戶가 農地를 賣却하였다. 1950~55年은 農地改革의 實施와 分配農地의 法定償還期間에 該當하는데 同期間中 農地賣却이 그 以後에 比하여 顯

<第Ⅲ-2表>

農 地 賣 却 時 期

(單位：戶)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戶數	年平均戶數
1950~55	5	1	6	3	15	2.5
1956~60	10	2	4	9	25	5
1961~65	8	2	6	7	23	4.6
1966~68. 6	2	1	5	7	15	6
計	25	6	21	26	78	4

著히 떨어지는 것은 農地改革法 第16條에서 分配農地에 대하여 償還完了時까지 賣買等行爲를 制限하였기 때문에 抑制된 것으로 보인다. 年平均 賣却戶數는 1956~60年보다 1961~65年에 若干 떨어졌다가 최근인 1966~68年 6月間에 6戶로서 20年間の 平均인 4戶에

하여 相當히 높은 賣却率을 보여주고 있다.

農地賣却의 理由는 調査票에 便宜上 6個項目의 理由를 提示하였지만 이들 項目사이에는 農民의 立場에서 볼 때 明確히 區分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表上의 ②, ③, ④는 實際로 區分하기가 困難하며 우리나라의 農家は 家計와 經營이 전혀 分離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①과도 事實上 區分이 어렵다. 그러나 ①, ②, ③, ④의 理由가 모두 否定的인 側面에서는 同一하더라도 ①은 보다 自律的이고 積極的인 姿 勢임에 反하여 ②, ③, ④는 不可避的으로 招來된 韓國農業의 停滯性과 農民의 生活相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이다. 全體 農地賣却農家中 ①農事は 收支가 맞지 않기 때문에 7.1% 이며 ②債務償還, ③生計費充當, ④冠婚喪祭費 充當은 各各 31.2%, 20.5%, 3.5%로서 이

〈第Ⅲ-3表〉 農 地 賣 却 理 由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① 農事は 收支가 맞지 않기 때문에	3	11	—	—	4	12	1	4	8	7.1
② 빚을 갚기 위하여	3	11	13	52	11	33	8	31	35	31.2
③ 生計費 때문에	7	25	3	12	3	9	10	39	23	20.5
④ 관혼상제비 때문에	3	11	—	—	—	—	1	4	4	3.5
⑤ 農地 交換을 위하여	7	25	6	24	13	40	1	4	27	24.3
⑥ 其 他	5	18	3	12	2	6	5	19	15	13.4
計	28	100	25	100	33	100	26	100	111	100.0

들 ②, ③, ④의 合計는 55.2%이다. 그리고 ⑤의 農地交換을 위하여는 24.3%이며, ⑥ 其他는 13.4%이다. 農地交換은 약간의 경우에는 上畝(田)을 賣却하고 下畝(田)을 買入하여 農地交換과 一部殘額으로 生計費등을 補充하는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平等한 條件 乃至 上級地로 指向하는 農地交換이라고 一旦 보고 ⑥의 其他는 우리나라의 農業現象에 비추어 거의 大部分 否定的인 側面의 理由에 屬하겠지만 그 切半을 肯定的인 것으로 본다면 農地賣却의 理由는 그 約 70%가 否定的, 30%가 肯定的이라고 할 수 있다.

農地賣却의 理由는 이를 耕地規模階層別로 볼 때 그 內容이 더욱 鮮明해진다. 〈第Ⅲ-4表〉에 의하면 ①의 農事は 收支가 맞지 않기 때문에 賣却한다는 理由는 大農의 경우 22.2%로서 가장 크고 中農 以下는 6% 内外로서 中農以下에 있어서는 農地賣却에 있어서도 債務償還이나 生計費用으로 賣却하는 경우보다 약간 積極的인 意味를 지니는 ①의 比重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②, ③은 中農에서 小, 細農으로 내려갈 수록 그 比重이 더 커지고 있다. ④는 設問의 類似性때문에 ②, ③에 包含되어 別途로 잘 나타나지

<第Ⅲ-4表>

階層別 農地 賣却 理由

(單位: 戶)

階層別	理由	貫 永 里						木 里						回 陽 里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大 農													4	1	2					1
中 農		1	1			3			4	1		2	1	1	2	2			8	2
小 農		1	2	4		3	3	3	1				1		8				4	
細 農		1	1	2	2	2	2	6	1				1	1	1					
計		3	4	6	2	8	5	13	3			6	3	4	11	3			13	2

階層別	理由	興 洞						全 體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計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大 農			1					2	22.2	1	11.1	—	—	—	—	5	55.6	1	11.1	9	100.0
中 農			3	1				2	6.3	10	31.3	4	12.5	—	—	13	40.6	3	9.3	32	100.0
小 農		1	1	3			3	2	5.3	14	36.8	8	21.1	—	—	7	18.4	7	18.4	38	100.0
細 農			3	6	1	1	2	2	6.1	11	33.3	10	30.4	3	9.1	4	12.0	3	9.1	33	100.0
計		1	8	10	1	1	5	8	36	22	22	3	3	28	28	15	15	112	112		

않았다. ⑤의 農地交換은 大農의 賣却理由中 55.6%를 占하고 中農에서는 40.6%임에 대하여 小農은 18.4%, 細農은 9.1%로 微微하다. ⑥의 其他는 各階層에 있어서 構成比가 大體로 비슷하다. 이렇게 볼 때 大農은 大部分 農地交換 또는 收支不均衡의 理由로 農地를 賣却하며 中農은 보다 많이 ①, ②, ③의 理由로, 그 보다는 조금 적게 ⑤의 理由로 農地를 賣却하고 小農과 細農은 大部分 ①, ②, ③, ④ 특히 ②, ③의 理由로 農地를 賣却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農地의 賣却事實은 <第Ⅲ-1表>에서 본 바와 같이 戶數로서는 中, 小, 細農 특히 小細農에서 顯著하므로 前述한 否定的 理由 70%, 肯定的 理由 30%는 階層別로 理由를 考察한데서도 뒷받침된다.

이제까지는 이미 賣却한 農地에 대한 調查·分析이였지만 賣却의 希望與否, 希望理由,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子孫에 대한 農業 계속 希望與否 등도 農地所有 變動의 考察에 一助가 된다. 階層別 農地賣却 希望與否를 보면 賣却希望이 大農에 있어서는 42.9%, 中農에 있어서는 27.8%, 小農 28.8%, 細農 17.0%이다. 앞서 <第Ⅲ-1表>의 賣却事實에서는 大農 및 細農의 構成比가 약간 높지만 階層別로 큰 差異는 없었음에 대하여 賣却希望에서는 이와 같이 格差가 懸隔하고 大農에서 耕地規模가 적은 階層으로 갈수록 希望比率이 下落하고 있는 것은 多少 逆說의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더 따지고 들어가면 小農 또는 細農階層이 農地를 賣却하는 것은 어떤 計劃下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견디다 못해 窮地에

〈第Ⅲ-5表〉

階層別 農地賣却 希望 與否

(單位：戶)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希望	不希望	希望	不希望	希望	不希望	希望	不希望	希望		不希望		計	
									戶數	%	戶數	%	戶數	%
大農	2	—	4	2	—	4	—	2	6	42.9	8	57.1	14	100.0
中農	4	5	4	13	5	16	2	5	15	27.8	39	72.2	54	100.0
小農	9	10	—	10	6	16	4	11	19	28.8	47	71.2	66	100.0
細農	6	12	2	14	1	2	—	16	9	17.0	44	83.0	53	100.0
計	21	27	10	39	12	38	6	34	49	26.2	138	73.8	187	100.0

몰려 不可避하게 판다는 것, 그리고 小, 細農은 農地를 賣却하여 轉業하거나 收支가 맞지 않다고 하여 農地를 賣却할 수 있는 可能性이 大農이나 中農에 比하여 보다 稀薄하다는 것의 다른 表現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것은 〈第Ⅲ-6表〉의 賣却希望者의 理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即 表에 의하면 ①의 收支가 맞지 않기 때문에 希望하는 것이 44.8%로 가장 많고 ②의 負債償還과 ③의 生計費充當이 各各 28.6%와 8.1%로서 賣却 希望時에는 ①이

〈第Ⅲ-6表〉

賣却 希望者의 理由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戶數	構成比	戶數	構成比	戶數	構成比	戶數	構成比	戶數	構成比
① 農事は 收支가 맞지 않기 때문에	11	53%	3	30%	8	67%			22	44.8%
② 밭을 갈기 위하여	4	19%	5	50%	1	8%	4	67%	14	28.6%
③ 부족한 生計費를 메우기爲하여	2	10%					2	33%	4	8.1%
④ 관혼상제비 때문에										
⑤ 農地 交換을 위하여	3	14%	2	20%	1	8%			6	12.2%
⑥ 其他	1	4%			2	17%			3	6.3%
計	21	100%	10	100%	12	100%	6	100%	49	100.0%

②, ③의 合計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⑤의 農地交換은 12.2%로서 過去 20年間의 賣却에 있어서는 賣却理由中의 24.3%를 占하였음에 比하여 約 그 切半에 不過하다. 이것은 否定的이라고 볼 수 있는 ①, ②, ③의 構成比가 80%를 超過하는 事實과 더불어 現在 및 將來의 農業에 대하여 過去 20年間보다도 훨씬 悲觀的으로 展望하고 있는 農民의 見解의 一端이 露出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다음 農地의 賣却問題에서는 약간 飛躍한 것이지만 内部的으로는 密接히 關聯된다고 볼 수 있는 子孫에 대한 農業의 繼續 希望與否를 調査하였다. 〈第Ⅲ-7表〉에 나타난 結果에 의하면 全體對象農家 187戶中 希望하는 農家は 22戶로서 11.8%에 不過하고 나머지 165戶

<第Ⅱ-7表>

子孫에 대한 農業繼續 希望 與否

單位：戶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希望	不希望	希望	不希望	希望	不希望	希望	不希望	希望		不希望		計	
									戶數	%	戶數	%	戶數	%
大農	—	2	—	6	1	3	—	2	1	7.2	13	92.8	14	100.0
中農	3	6	—	17	1	20	2	5	6	11.0	48	89.0	54	100.0
小農	5	14	1	9	—	22	3	12	9	13.8	57	86.2	66	100.0
細農	5	13	—	16	—	33	1	15	6	11.2	47	88.8	53	100.0
計	13	35	1	48	2	48	6	34	22	11.8	165	88.2	187	100.0

88.2%는 子孫이 農業을 繼續하기를 希望하지 않는다. 그리고 階層別로 보면 大農의 希望이 7.2%, 中農 11.0%, 小農 13.8%이며, 細農이 11.2%이다. 各階層 共히 壓倒的인 比率이 希望하지 않고 있지만 그 程度에 있어서는 大農의 不希望程度가 가장 強하고 小農의 그것이 가장 相對的으로 弱하다는 것은 興味있는 事實이다. 다 같이 農業의 收支不均衡을 알면서 營農이나 生計에 있어서 더욱 困難이 많을 小農보다도 大農의 不希望程度가 強하다는 것은 받는 困難보다도 轉業의 現實의 可能性으로 보아 資力과 教育程度 등으로 大農側이 보다 有利하기 때문에 나타난 結果가 아닐까? 한편 小農의 이와같은 別다른 道理가 없이 不可避的으로 歸結되는 農業에의 執着性, 惡條件에의 耐久力이야말로 바로 資本에 의한 不平等한 農業支配에 土臺를 提供해 주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2. 農地의 買入

農地의 買入은 그것이 農地의 交換을 위해서이건 經營規模의 擴張을 위한 것이건 간에 相當히 肯定的이며 鼓舞的인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農地改革以後 1968年 6月까지의 約 20年間に 한번이라도 農地를 買入한 事實이 있는 農家를 우선 調査한 結果가 <第Ⅲ-8表>이다.

表에 의하면 對象農家 187戶中 農地의 買入事實이 있는 農家は 98戶로서 全體의 52.4%를 占한다. 이를 各階層別로 보면 大農은 總 14戶中 11戶로서 78.5%가 買入事實이 있으며 中農에 있어서의 比率은 68.2%, 小農 47.0%, 細農 35.9%이다. 農地의 買入事實은 大農에서 耕地規模가 작은 階層으로 내려올 수록 그 比率이 떨어지고 있으며 細農은 大農의 切半에도 未達한다. 이는 農地의 賣却事實에 있어서 大農과 細農의 比率이 各各 높고 中, 小農의 그것이 相對的으로 낮았던 것과는 매우 對照的이다. 下部의 階層일 수록 農地를 買入할 수 있는 可能性이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大, 中農層에 比하여 小, 細農層

<第Ⅲ-8表>

階層別 農地買入 事實 與否

單位：戶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 다		없 다	
									戶數	%	戶數	%
大 農 (100.0)	1	1	6	0	3	1	1	1	11 (78.5)	11.2	3 (21.5)	3.4
中 農 (100.0)	7	2	9	8	19	2	2	5	37 (68.2)	36.7	17 (31.8)	19.1
小 農 (100.0)	9	10	3	7	15	7	4	11	31 (47.0)	32.6	35 (53.0)	39.3
細 農 (100.0)	7	11	6	10	1	2	5	11	19 (35.9)	19.4	34 (64.1)	38.2
計 (100.0)	24	24	24	25	38	12	12	28	98 (52.4)	100.0	89 (47.6)	100.0

의 比率이 낮은 것은 一應 當然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各階層의 買入事實比率은 비록 20年間이라는 比較的 長期間의 것이기는 하지만 大體로 높게 나타나 있다. 이들 比率이 大體로 높게 나타나게 된 것은 對象農家의 構成에 있어서 比率增大에 마이너스效果를 줄 移出農家は 除外되어 있고 그 反面 固定農家外에 出生農家와 特히 移入農家가 包含되어 있어 買入事實은 比較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第Ⅲ-8表>를 前記 <第Ⅲ-1表>와 比較해 볼 때 農地賣却事實은 大農 및 細農이 64.3%와 62.3%이고 中,小農이 59.3%와 57.6%로서 60%를 若干 上廻 또는 下廻함에 비하여 買入事實은 各階層間에 格差가 甚하여 現在의 大農 및 中農은 78.5%와 68.2%로 賣却事實보다 各各 14.2% 포인트와 8.9% 포인트가 높고 小農 및 細農은 47.0%와 35.9%로서 反對로 賣却事實이 買入事實보다 10.0% 포인트와 26.4% 포인트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一回의 賣却과 買入의 規模가 萬若 同一하다고 假定한다면 現在의 大農과 中農은 賣却보다 買入事實이 더 많은 가운데서 그리고 現在의 小農과 細農은 買入보다 賣却事實이 더 많은 가운데 形成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음 農地買入者의 身分을 보면 設問의 身分別 區分이 지나치게 單純化되어 있기 때문 인지는 모르겠으나 自耕者가 全體 112戶中 99戶로서 88.5%를 占하고 貸地人은 11戶로 9.8% 不明이 2戶로 1.7%이다. 그리고 若干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全南 光州等 地의 都市 居住者가 아직도 相當히 農地를 所有하고 있는 全南의 貫永里와 釜山에 가까운 金海의 興洞에서 貸地人의 比率이 17.9%와 11.6%로 比較的 높게 나타난 點이라 하겠다. (<第Ⅲ-9表> 參照)

<第Ⅱ-9表>

農地買入者의 身分

地域別 身分別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戶數	構成比 %	戶數	構成比 %	戶數	構成比 %	戶數	構成比 %	戶數	構成比 %
自耕者	22	78	25	100	30	91	22	85	99	88.5
貸地人	5	18	0		3	9	3	12	11	9.8
不明	1	4	0		0		1	4	2	1.7
計	28	100	25	100	33	100	26	100.0	112	100.0

農地買入에 있어서의 階層別 資金源을 自力資金과 借入資金으로 區分하여 調査한 結果에 의하면 全體 100戶中 自力資金으로 農地를 買入한 農家가 92戶로 92.0%이고 借入資金에 의한 것이 8戶로 8.0%이다. 이를 階層別로 보면 大農과 中農은 各各 11戶와 37戶 모두가 自力資金으로, 그리고 小農과 細農은 自力資金에 의한 것이 各各 84.0%와 86.0%이고 借入資金에 資金源泉을 두는 것이 16.0%와 14.0%이다. 資金源泉으로 본 農地의 買入은 大, 中農階層은 完全히, 小·細農階層은 84~85%를, 그리하여 全體는 壓倒的인 部分을 自力資金에 두고 있는 셈이다. 이와같이 自力資金의 比率이 높은 것은 農業經營을 通한 資本蓄積의 結果 農地買入資金을 借入資金에 依存할 必要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第Ⅱ-10表>

階層別 農地買入資金源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自力	借入	自力	借入	自力	借入	自力	借入	自力		借入	
									戶數	%	戶數	%
大農 (100.0)	1	—	6	—	3	—	1	—	11	11.9	—	—
中農 (100.0)	7	—	9	—	19	—	2	—	37	40.2	—	—
小農 (100.0)	7	2	3	—	13	2	3	1	26	28.3	5	62.5
細農 (100.0)	6	1	—	—	1	—	5	2	18	19.7	3	37.5
計 (100.0)	21	3	24	—	36	2	11	3	92	100.0	8	100.0

하기 보다는 主로 다음의 두가지에 原因이 있는 것 같다. 첫째, 農業經營 特히 農地買入의 大宗을 이룰 耕種農業에 있어서는 收支의 不均衡이 顯著하여 借入에 의한 農地의 買入이 事實上 거의 不可能한 點, 둘째 農協등의 金融機關에서 農地買入을 위한 長期 低利의 農業金融보다도 短期的인 經營資金인 農事資金, 負債整理資金, 糧穀資金 등에 置重하여 왔기 때문에 金融機關으로부터 條件이 좋은 借入資金을 얻을 수 없었다는 點을 들 수 있

다. (〈第Ⅲ-10表〉 參照).

다음으로 自力資金에 의하여 農地를 買入하였을 경우 이 自力資金의 源泉을 다시 ①農事로 貯蓄한 것, ②兼業收入에 의한 것, ③其他의 세가지로 區分하여 본 것이 〈第Ⅲ-11表〉이다.

表에 의하면 全體 91 戶中 農事貯蓄에 의한 農家가 49 戶로 53.9%, 兼業收入이 25 戶로 27.5%, 그리고 其他資金源泉이 17 戶로 18.6%이다. 卽 自力資金으로 農地를 買入하였을 때라도 農事貯蓄에 의한 것은 切半을 若干 上廻하고 나머지 거의 切半을 兼業收入과 其他資金에 依存하고 있다는 것이다. 各 階層別 自力資金 源泉別 構成比는 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大, 中, 小農에 있어서는 大體로 類似하며 農事貯蓄, 兼業收入, 其他의 順임에 대하여 細農만은 兼業收入이 越等히 크고 다음이 其他, 農事貯蓄의 順位로서 農事貯蓄의 構成比는 22.3%에 不過하다.

〈第Ⅲ-11表〉 階層別 農地 自力買入 資金源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農事貯蓄	兼業收入	其他	農事貯蓄	兼業收入	其他	農事貯蓄	兼業收入	其他	農事貯蓄	兼業收入	其他	農事貯蓄		兼業收入		其他	
													戶數	%	戶數	%	戶數	%
大農 (100.0)	—	1	—	4	1	1	2	1	—	—	—	1	6	12.2	3	12.0	2	11.7
													(54.6)		(27.2)		(18.2)	
中農 (100.0)	4	1	—	5	2	2	14	3	2	—	1	1	23	46.9	7	28.0	5	29.8
													(65.6)		(20.0)		(14.4)	
小農 (100.0)	4	4	—	3	0	0	8	3	2	1	—	2	16	32.6	7	28.0	4	23.4
													(59.3)		(26.0)		(14.7)	
細農 (100.0)	1	4	1	1	3	2	—	1	—	2	—	3	4	8.3	8	32.0	6	35.1
													(22.3)		(44.5)		(33.2)	
計 (100.0)	9	10	1	13	6	5	24	8	4	3	1	7	49	100.0	25	100.0	17	100.0
													(53.9)		(27.5)		(18.6)	

그리하여 大農 및 中農階層과 小農 및 細農階層의 2大階層集團으로 나누어 農地의 買入에 關聯된 諸事項을 總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大農 및 中農은 農地買入事實이 있는 農家가 78.5%와 68.2%, 資金源泉은 自力資金이 各各 100%, 그리고 自力資金은 農事貯蓄에 의한 것이 54.6% 및 65.6%이다. 이에 대하여 小農 및 細農은 買入事實이 있는 農家가 47.0%와 35.9%에 不過하고 自力資金이 各各 84.0%와 86.0%이며, 自力資金은 農事貯蓄에 의한 것이 59.3%와 22.3%이다. 따라서 大農과 中農은 農地買入事實도 많고 全部 自力資金에 의하고 그 中 많은 部分을 農事貯蓄에 依存하고 있음에 대하여 小農과 細農은 買入事實도 相當히 적고 自力資金에 8割 以上을 依存하되 自力資金中 農事貯蓄에 의한 것

은 比較的 적으며 細農의 경우 顯著히 적다고 할 수 있다.

3. 農地의 開墾・干拓

農地의 開墾・干拓事實도 賣買事實과 함께 農地所有變動에 있어서 考慮되어야 할 事項이다.

이를 우선 地域別로 보면 山間地帶인 回陽里가 開墾事實이 가장 많고 다음이 貫永里이며 周圍에 開墾・干拓의 餘地가 거의 없는 木里나 興洞은 그 事實이 매우 적게 나타나 있다. 對象農家 187 戶中 開墾事實이 있는 農家は 34 戶로 18.2%를 占하며 나머지 153 戶, 81.8%가 開墾事實이 없다. 이를 階層別로 보면 大農은 全體 14 戶中 5 戶가 開墾事實이 있어 31.3%의 比重을 占하며 中農은 總 54 戶中 11 戶로 20.0%, 小農은 66 戶中 13 戶로 19.8%, 그리고 細農은 53 戶中 5 戶로 9.3%이다. 即 農地의 開墾事實은 大農階層에서 가장 많고 下部階層으로 내려올 수록 적어지고 있다. 全體 對象農家に 있어서 20 年間に 開墾事實이 있는 農家は 비록 18.2%에 不過하지만 現在의 大農 및 中農의 形成에 있어서 開墾은 小農 및 細農에게 比하여 相對的으로 더 積極的인 役割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第Ⅲ-12表〉 參照)

〈第Ⅲ-12表〉

階層別 農地開墾・干拓與否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 다		없 다	
									戶數	%	戶數	%
大 農 (100.0)	—	2	1	5	4	—	—	2	5	14.7	9	5.9
中 農 (100.0)	2	7	1	16	8	13	—	7	11	32.3	43	28.1
小 農 (100.0)	4	15	—	10	8	14	1	14	13	38.2	53	34.6
細 農 (100.0)	3	15	—	16	1	2	1	15	5	14.7	48	31.4
計 (100.0)	9	39	2	47	21	29	2	38	34	100.0	153	100.0
									(31.3)		(68.7)	
									(20.0)		(80.0)	
									(19.8)		(80.2)	
									(9.3)		(90.7)	
									(18.2)		(81.8)	

IV. 地主小作關係와 小作條件의 變動

1. 地主小作關係

地主小作關係는 하나의 制度로서는 農地改革에 依하여 原則的으로 否定되었다. 그러나 小作은 公認된 制度로서는 否定되었지만 결코 消滅되지는 않고 現實的인 關係로서는 儼然

히 존재해 왔으며 漸次 擴大되고 있다. 그것은 改革의 前後 過程에서 小作을 徹底하게 否定하지 못하였고 改革 以後의 韓國農業과 資本主義가 小作의 再生과 擴大를 促進하도록 展開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가지 明白한 事實은 農業에 대한 資本의 不平等한 支配가 가장 重要한 制約이라는가 또는 地主가 過去와 같은 大地主가 아니라든가 또는 親戚의 땅을 事情하여 經營한다고 하여 小作關係의 害惡이 조금이라도 減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甚한 不等價交換下에서의 地主小作關係는 例컨대 50%의 現物小作料는 不等價交換이 甚하지 않았을 때의 그 以上の 小作料와 同等한 負擔으로서 二重苦를 加할 뿐 農業生産力과 農家所得에 대한 否定的 要因으로서는 同一한 것이다.

地主·小作의 變動은 II의 3) 및 4)에서 時期別, 期間別로 本 營農種別(階級別) 農地所有變動에서 이미 考察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省略한다. 다만 이번 調査에서 나타난 小作地의 規模와 小作地의 性格, 小作地地主의 性格, 地主와의 關係, 小作人의 地主에 대한 態度만을 보코자 한다.

먼저 小作地의 規模를 보면 <第IV-1表>와 같다. 小作地는 貫永里에서 全體 經營地의 11.0%, 木里에서 13.6%, 回陽里에서 12.8%이며 興洞은 3.8%이고 全體로서는 11.1%이다. 小作關係는 對象農家에서 公開하기를 매우 忌避하는 關係로 調査에 困難이 많았으며

<第IV-1表> 小 作 地 의 規 模 (單位: 坪)

	貫 永 里	木 里	回 陽 里	興 洞	全 體
總經營地 (A)	108,532	148,327	181,950	87,448	526,257
小作地 (B)	11,950	20,100	23,250	3,320	58,620
B/A(%)	11.0	13.6	12.8	3.8	11.1

全體 11.1%는 1965年의 政府發表 13.6%보다도 낮으며 實際로는 이보다 相當히 높을 것으로 推測된다⁽⁵⁾. 興洞을 除外한 3個地帶의 小作地比率는 12.6%이다.

다음 小作地의 性格을 보면 位土 또는 宗畚을 小作하는 農家가 21戶로 34%이고 入隊者·公務員의 農地를 小作하는 農家가 8戶에 13%, 寺院地는 없고 新開墾地가 1戶(2%), 教育財團地 1戶(2%), 試驗地는 없으며 其他가 30戶로 49%이다. 이 其他는 ①~⑥에서 特別히 列擧하지 않는 農地로서 大部分 一般農地이다. 이와같이 小作地는 一般農地와 位土 乃至 宗畚이 많으며 餘他的 것은 微微하다.

(5) 貫永里는 1次調査에서는 小作地가 6%未滿이었으나 2次의 間接調査 結果 11.0%로 上昇하였으며 木里, 回陽里등에서 比較的 比率이 높은 것도 緣故地로서 對象農家의 協力이 더욱 圓滿하였기 敍므로 보임. 興洞은 1次調査의 結果임.

<第Ⅳ-2表> 小 作 地 地 主 的 性 格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① 位士, 宗奮	4	27	11	42	6	32			21	34
② 入隊者·公務員	6	40	1	4			1	100	8	13
③ 寺 院										
④ 新 開 墾 地	1	7							1	2
⑤ 教 育 財 團			1	4					1	2
⑥ 試 驗 地										
⑦ 其 他	4	27	13	50	13	68			30	49
計	15	100	26	100	19	100	1	100	61	100

小作地 地主의 職業別 性格을 보면 地主가 商人이라고 應答한 農家가 20戶(33%)로 가장 많고 다음이 其他 18戶(30%), 自耕者 14戶(23%), 公務員 9戶(15%)의 順이다. 이렇게 볼때 地主中 自耕者를 除外한 77%가 非農民이며 그 가운데 商人이 가장 많은 33%를 占한다. 農村에 土地 以外의 適當한 投資對象이 적고 投資의 安全性이나 糧穀確保라는

<第Ⅳ-3表> 小 作 地 地 主 的 性 格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自耕者			1	4	13	68			14	23
商人	11	73	7	27	2	11			20	33
公務員	2	13	6	23			1	100	9	15
其他	2	13	12	46	4	21			18	30
計	15	100	26	100	19	100	1	100	61	100

要因이 어느 정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低穀價政策때문에 土地는 投資誘因을 거의 喪失하고 있는 點에 비추어 보아 地主의 77%가 非農民이라는 것은 土地投資가 直接 目標가 아니고 高利貸資本의 浸透의 結果가 아닌가 하는 推測을 낳게 한다. 特히 商人이 地主의 33%나 된다는 것은 가장 合理的인 計算을 하는 商人의 本質에서 보아 高利貸와 的 結付可能性을 길게 한다.

小作人의 地主와의 關係를 나타낸 것이 <第Ⅳ-4表>이다. 表에 의하면 小作農家 16戶中 地主가 親戚이라고 應答한 農家가 가장 많은 40戶로서 66%를 占하며 知人이 13戶(21%) 其他가 8戶(13%)이다.

그리고 小作人의 地主에 대한 態度를 볼 때 積極인 好意 또는 感謝에서 中立, 對立,

〈第Ⅳ-4表〉 地 主 와 의 關 係

	貫 永 里		木 里		回 陽 里		興 洞		全 體	
	戶 數	%	戶 數	%	戶 數	%	戶 數	%	戶 數	%
親 戚	11	73	19	73	9	47	1	100	40	66
知 人	2	13	3	12	8	42			13	21
其 他	2	13	4	15	2	11			8	13
計	15	100	26	100	19	100	1	100	61	100

모르겠다 등으로 區分한 設問에 대하여 多分히 中立的인 ①「서로 좋자는 것이니 그저 그렇다」고 應答한 農家가 30戶 全體의 49%로서 가장 많고, ②「땅을 빌려준 고마운 사람이다」고 應答한 農家가 25戶로 全體의 41%, ③「땅은 얻어 쓰지만 좋게는 안본다」가 1戶, ⑤「모르겠다」가 5戶에 8%이다. 地主를 對立的으로 아주 미워하는 農家는 하나도 없다. (〈第Ⅳ-5表〉 參照)

上述한 2表에 의하면 地主에는 親戚이 過半數를 占하고 小作人의 地主에 대한 態度도 比較的 中立乃至 好意的임을 알 수 있다. 小作人은 地主의 殆半이 親戚이라는 事實 뿐만 아니라 自己의 勞動力을 所得으로 顯在化할 수 있는 場을 빌려 주었다는데서 또는 小作料로서 現物 50%程度를 받더라도 金利나 商業마진에 比하면 결코 地主에게 利로울 것이 없다는 事情을 小作人도 알고 있다는 데서 中立 또는 好意的인 態度를 取하는 것 같다. 그러나 全體 韓國農業 또는 農業發展의 立場에서 보더라도 果然 이러한 地主小作關係에 대하여 中立 또는 好意的일 수 있을까?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自作農의 경우에도 單純再生産이 어려운 農業을 圍繞한 惡條件下에서 50% 以上の 小作料를 負擔하는 小作이 보다 결코 有利할 수는 없다. 결국 〈第Ⅳ-5表〉의 小作人의 地主에 대한 態度는 地主小作關係에 있어서 汎小作人의 汎地主에 대한 態度로 擴大되어질 수 없는, 個別 小作人의 特定 地主에 대한

〈第Ⅳ-5表〉 小作人의 地主에 對한 態度

	貫 永 里		木 里		回 陽 里		興 洞		全 體	
	戶 數	%	戶 數	%	戶 數	%	戶 數	%	戶 數	%
① 땅을 빌려준 고마운 사람이다	5	33	8	31	11	58	1	100	25	41
② 서로 좋자는 것이니 그저 그렇다	8	53	15	58	7	37			30	49
③ 땅은 얻어 쓰지만 좋게는 안본다	1	7							1	2
④ 나와 이해가 대립되니 밉다										
⑤ 모르겠다	1	7	3	12	1	5			5	8
計	15	100	26	100	19	100	1	100	61	100

態度, 合理的인 價値判斷이기 보다는 多分히 倫理的인 意思의 表出로 밖에 볼 수 없다. 가령 地主小作關係가 現在의 韓國農業에서 支配的인 矛盾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萬若 <第 IV-5表>의 態度가 普遍的인 것이라면 그로부터 韓國農民의 自救能力의 喪失, 農民運動方向의 混迷相을 兪보기에 不足할 것이 없다.

2. 小作條件의 變動

小作條件에 대하여도 農地所有變動에서와 같이 1949年 6月과 1955年 6月 및 1968年 6月의 3時期로 區分하여 그 變動을 調査하였다. 調査는 契約方法, 契約期間, 小作料(現物, 現金, 勞動, 其他) 契約條件(定額, 從收穫量)에 대하여 行하였다. 時期別 各地域別 小作條件은 다음 <第IV-6表>와 같다.

<第IV-6表> 小 作 條 件 의 變 動

區 分		貫 永 里			木 里			回 陽 里			興 洞		
		農地改革前(1949. 6) (A)	農地改革後(1955. 6) (B)	現在(1968. 6) (C)	(A)	(B)	(C)	(A)	(B)	(C)	(A)	(B)	(C)
契約方法	文書						○(1)				○(18)	○	
	口頭	○	○	○	○	○	○(4)	○	○	○	○(2)		○
契約期間		1年	1年	1年	10年	年	1年	1年	1, 10年	1(8), 10(2)年	5(14), 10(2)年	10年	1年
小作料	現物	200坪當 2石 수확량의 %	200坪當 2石 수확량의 %	200坪當 石 수확량의 50%	石 60%	石 %	石 50%	石 50%	0.5-0.7石 %	0.5-0.8石 50%	1.4石 70%	1石 70%	石 50%
	現金												
	勞動												
	其他												
契約條件	定額	○	○					○(5)	○	○	○(15)	○	
	收穫量에 따른다.			○	○		○	○(1)		○	○(6)	○	○

各 時期別 地域別 小作條件의 變動에 대한 具體的인 言及은 避하고 全體的인 變動傾向을 보면 우선 契約方法是 興洞을 除外하고는 大部分 口頭契約이며 現在는 모두 口頭契約이다. 그리고 契約期間은 全羅南道에 比하여 慶尙南道地方이 大體로 長期이며 亦是 現在는 모두 1年이다. 小作料는 各 地域이 모두 現物小作料이며 大體로 보아 地味가 肥沃한 貫永里, 興洞등이 높고 山間地帶인 回陽里는 현저히 낮으며 전체로 보아 農地改革前에 比하여 農地改革後, 現在의 順으로 낮다. 끝으로 契約條件은 農地改革前 (A)과 後 (B)에는

大部分 定額이었으나 現在는 一律的으로 從收穫量이다. 小作條件은 各 地域을 網羅하여 時期別로 볼 때 契約期間으로 보아서는 長期에서 短期로 되어 形式的으로는 小作人에게 不利해진듯 하나 現在는 小作을 떼고 붙이는 過程에서의 地主의 橫暴단 前과 같지 않고 1年 이라 하여도 慣例上 別일이 없으면 계속 耕作하므로 契約期間으로서는 有利 不利를 論하기 어렵고 다만 小作料率로 보아서는 ㉠, ㉡時期보다 比較的 下落하였다. 그러나 穀價의 相對的 低落과 營農費의 昂騰이 隨伴되었기 때문에 小作料率의 下落이 곧 小作人의 福利 增進으로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V. 移出農家の 農地所有變動과 移出行態

1. 移出農家の 農地所有變動

4 個地域에서는 總 80 戶의 移出農家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 이들의 階層別 構成은 <第 V-1表>와 같다. 表에 의하면 移出農家로서 大農은 없었고 中農이 7 戶로서 전체의 9%, 小農이 25 戶로 31%, 그리고 細農이 48 戶로 60%를 占하여 細農이 60%, 小細農이 91%의 壓倒的 比重을 占함을 알 수 있다.

<第 V-1表>

移出農家の 階層別 區分

(單位：戶)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戶數	%
中	農	2	—	3	2	7	9
小	農	8	6	6	5	25	31
	細農	17	13	12	6	48	60
	計	27	19	21	13	80	100

移出農家は 農地改革以前부터 4 個地域에 居住하였던 것이 總 57 戶이다. 그런데 이들의 經營地에 대하여 農地改革前과 移出當時와를 比較하여 增加, 不變, 減少의 3 區分에 의한 變動狀況을 나타낸 것이 <第 V-2表>이다. 表에 의하면 移出農家中 改革前에 比하여 移出當時에 經營地가 增加한 것은 4 戶로 全體의 7%에 不過하고 反面 36 戶(63%)가 減少하였으며 17 戶(30%)가 不變이었다. 이렇게 볼 때 뒤에서 移出原因은 다시 考察할 것이지만 農家の 農村으로부터의 脫落과 經營地의 減少와는 매우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勿論 이러한 減少에는 大農에서 中農으로의 減少와 같이 반드시 離農의 直接의 原因으로 되기 어려운 것도 있겠으나 <第 V-1表>에서 移出農家가 階層別로 小細農이 壓倒的이었던

移出農家の經營地變動 (單位：戶)
 (第Ⅴ-2表) (農地改革前과 移出當時 對比)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戶數	%
增加	1	1	2	—	4	7
不變	5	1	2	9	17	30
減少	11	15	8	2	36	63
計	17	17	12	11	57	100

것과 關聯하여 보면 農家階層의 下降運動이 離農의 큰 原因의 하나임을 알 수 있게 한다.

2. 移出農家の 移出原因

移出農家の 階層別 移出原因을 보면, ①「農土가 없거나 적어서 生計가 어려워」移出한 農家가 單一 原因으로서 가장 많아 30戶로 全體의 37%를 占하며, ②「빚 때문에」가 2戶로 3%, ③「都會地에 나가 成功한 家口員에게로」가 17戶에 22%, ④「事故나 싸움 때문에」가 1戶(1%), ⑤ 其他가 30戶로 37%이다. 原因 ①과 ②는 相互 關聯이 깊으므로 極히 否定的인 이들 ①, ②를 합쳐서 본다면 細農은 60%가 이 範疇에 들며 全體로서는 40%에 該當된다. 그리고 ③은 그 原因이 農業經營이나 收支의 均衡, 不均衡과 直接的인 關聯은 없지만 이것에는 반드시 肯定的인 事由만이 作用한 것은 아닐것으로 보인다. ④의 原因은 經營外的인 것이라 하더라도 ⑤는 지나치게 包括的이어서 解釋하기가 어렵지만 調査過程에서의 應答에서는 農事의 收支不均衡이 가장 큰 理由였고 其他 子女教育, 「農村이

移出農家の 階層別 移出原因 (單位：戶, %)
 (第Ⅴ-3表)

移出原因	地域				全體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中農	小農	細農	計
① 農土가 없거나 적어서 生計가 어려워	0 0 6 6	0 0 8 8	0 0 7 7	0 3 6 9	0 (0)	3 (12)	27 (56)	30 (37)
② 빚 때문에	0 0 0 0	0 0 1 1	0 0 1 1	0 0 0 0	0 (0)	0 (0)	2 (4)	2 (3)
③ 都會地에 나가 成功한 家口員에게로	2 2 7 11	0 2 2 4	0 0 0 0	0 1 1 0 2	3 (43)	5 (20)	9 (19)	17 (22)
④ 事故나 싸움 때문에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1 (2)	1 (1)
⑤ 其他	0 6 4 10	0 4 2 6	3 6 3 12	1 1 0 2	4 (57)	17 (68)	9 (19)	30 (37)
計	2 8 17 27	0 6 13 19	3 6 12 21	2 5 6 13	7 (100)	75 (100)	48 (100)	80 (100)

싫고 都市가 좋아서」등등 大部分은 現在의 農業과 農村에 대한 不滿때문이었다. 이것은 ⑤ 其他가 中農의 57%, 小農의 68%로 되어있는 點으로서도 그 事情을 짐작케 한다. 결국 移出原因은 若干의 非經濟的 事情에 의한 都市移轉(③의 一部)과 亦是 非經濟的인 ④(1%)를 除外하면 거의 모두가 農業과 農村에 대한 否定으로서 移出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第Ⅴ-3表〉 參照)

3. 移出農家の 移出地

다음 移出農家の 階層別 移出地를 보면 〈第Ⅴ-4表〉와 같다.

移出地域을 ① 大都市, ② 中小都市, ③ 他農村, ④ 其他로 區分하였을 때 全體 80戶中 45%인 36戶가 大都市로 移出하여 가장 큰 比重을 占하고 다음이 他農村 22戶로 27%,

移出農家の 階層別 移出地
(移出當時) (單位: 戶, %)

〈第Ⅴ-4表〉

移出地	地 域				全 體															
	中	小	細	計	中	小	細	計												
① 大都市	1	3	11	15	0	1	4	5	1	4	4	9	2	3	2	7	4	11	21	36
② 中小都市	7	4	6	11	0	4	4	8	0	0	1	1	0	1	0	1	1	9	11	21
③ 他農村	0	1	0	1	0	1	5	6	2	2	6	10	0	1	4	5	2	5	15	22
④ 其他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1	1
計	2	8	17	27	0	6	13	19	3	6	12	21	2	5	6	13	7	25	48	80
																	(100)	(100)	(100)	(100)

中小都市 21戶로 27%, 其他 1戶에 1%이다. 결국 移出農家は 都市로 72%가 移住하고 나머지 27%가 他農村으로 가는 셈이다. 移出地域別 階層別로는 大都市로의 移出이 各階層에서 모두 높지만 中農層이 특히 높으며 中小都市에는 小農層이 높다.

4. 移出農家の 就業狀況

移出農家の 移出當時의 就業狀況은 離農現象의 社會經濟的 意義를 分析하는데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 〈第Ⅴ-5表〉는 大體로 第1次産業, 第2次産業 및 第3次産業別로 본 移出當時의 就業狀況이다. 移出農家 總 80戶中 가장 많은 農家가 就業⁽⁶⁾한 部門은 ②「商人,

(6) 都市의 行商, 품팔이 등을 就業으로 分類하는 것은 無理이나 여기서는 就業, 失業의 問題라기 보다 部門이 考慮의 主對象이므로 그대로 就業이라고 表現키로 한다.

품팔이 등 都市에서의 3次産業部門으로서 全體의 45%에 해당하는 35戶가, 그 다음이 ③의 農業部門으로 18戶에 23%, ① 鑛工業部門은 6戶에 7%이고 不明이 8戶(10%), 其他가 13戶(15%)이다. 생각컨대 ④의 不明은 移出後의 連絡杜絶에 基因하는 것으로 大部分 ②部門이나 部分的으로 ①部門에 屬할 것 같다. 그리고 ⑤其他는 移出時 勞動能力喪失 혹은 都市家口員에의 寄食 등으로 事實上 自發的乃至 非自發的 失業狀態에 있는 것이 大部分이다. 따라서 移出農家の 移出當時의 最大 就業部門으로는 商人, 품팔이 등 都市에서의

移出農家の就業狀況 (移出當時) (單位: 戶, %)

部門別	地域階層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中	小	細	計	中	小	細	計	中	小	細	計	中	小	細	計				
① 鑛工業部門	0	1	0	1	0	0	1	0	1	1	2	2	0	0	2	2	2	6		
																(29)	(8)	(4)	(7)	
② 商人, 품팔이 등 都市에서의 3次産業	2	4	9	15	0	2	2	4	1	3	7	11	0	2	3	5	3	11	21	35
																	(42)	(44)	(42)	(45)
③ 農事를 지으러	0	1	0	1	0	1	5	6	2	2	4	8	0	1	2	3	2	5	11	18
																	(29)	(20)	(22)	(23)
④ 不明	0	1	4	5	0	0	0	0	0	0	0	0	0	2	1	3	0	3	5	8
																		(12)	(10)	(10)
⑤ 其他	0	1	4	5	0	3	5	8	0	0	0	0	0	0	0	0	0	4	9	13
																		(16)	(22)	(15)
計	2	8	17	27	0	6	13	19	3	6	12	21	2	5	6	13	7	25	48	80
																	(100)	(100)	(100)	(100)

3次産業部門이며 다음이 農業部門이고 가장 所望스러운 鑛工業部門으로의 移出은 微微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이것은 產業豫備軍의 풀(pool)로서의 農村이 제대로 人口吸收의 機能을發揮하지 못함으로써 不可避的으로 都市를 向하여 脫落된 農民을 내뿜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VI. 新農地法の 主要規定에 대한 反應

1. 3町步上限制에 대하여

農地所有의 限度를 3町步로 制限하고 있는 現行 農地改革法の 規定에 대하여 1960年代에 들어선 以後 農業構造改善을 위한 類型別 育成方向을 圍繞한 줄기찬 論爭과 農地法 制定過程에서도 制限과 撤廢가 數없이 反復되는 中에서 3町步 所有上限制規定은 언제나 論爭의 焦點이 되어 왔다. 上限制 撤廢에 대한 贊反 兩論은 基本的으로는 韓國農業에 대한 認識如何에 따라 對立되게 된 것이며 撤廢의 贊成論者는 上限制規定이 企業農의 展開를

가로막고 있다고 보아 3町步上限制를 철폐하면 企業農의 展開가 可能하게 될 것이라고 봄에 反하여 反對論者들은 現在와 같은 低農產物價格政策등으로 代辯되는 農業에 對한 不均等的인 支配下에서는 企業農의 展開可能性이 없고 오히려 上限制를 撤廢할 경우 歷史的인

<第VI-1表> 3町步 上限制에 대하여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大	農	1	1				6				3	1				2					1	7	12	86	1	7		14	100		
中	農	1	3	5			111	1	4		4	9	7	1		6	1				6	11	29	54	14	26	5	9	54	100	
小	農		9	2	8		4	1	5		6	13	3		111	2	1				1	2	30	45	18	27	17	26	66	100	
細	農	1	3	2	12		9		7		1	2	2		8	5	1	2	4	1	2	21	40	7	13	22	41	53	100		
計		3	16	9	20		1	30	2	16		4	19	21	6	2	1	27	8	2	2	1	9	5	92	40	21	44	24	187	100

註：(設問) 한 農家가 농지를 3정보(9,000 坪)이상 못가지게 하는 規定에 대하여

- ① 소유를 3정보로 제한하는 때문에 영농개선을 못하고 있다.
- ② 3정보로 묶어 놓는 것이 앞으로 농업발전에 지장이 되므로 철폐해야 한다.
- ③ 실제로 3정보 제한때문에 농사를 개량하고 발전시키는데 지장받았다는 말은 못들었다.
- ④ 3정보제한을 풀어 놓으면 영농개선은 커녕 不在地主가 생기고 농민은 소작인으로 다시 떨어질 것이다.
- ⑤ 모르겠다.

退行으로서의 小作關係의 再生이 強化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미 新農地法(案)에는 上限制規定을 存置(法 第7條)하되 所謂 企業農에게는 그 適用을 排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上限制 規定에 대하여 實際 營農에 宗사하는 農民의 反應은 어떠한가를 조사하였다. 設問은 <第VI-1表>의 註에서와 같이 積極的인 贊成에서 積極的인 反對에 이르는 것과 모르겠다를 項을 넣었다.

表에 의하면 우선 全體 187 戶에 있어서 가장 積極的인 贊成이라고 할 수 있는 設問 ①項은 單 2 戶(1%)에 不過하고 ②項을 便宜上 消極的인 贊成이라고 한다면 ②項에 同意한 農家가 9 戶로 5%, 그리고 ③項을 또한 便宜上 消極的인 反對라 한다면 消極的으로 反對한 農家가 92 戶에 49%를 占하며 ④項은 積極的인 反對인데 40 戶에 21%이고 ⑤項 「모르겠다」가 44 戶에 24%를 차지한다. 이러한 數字는 다시 贊成과 反對로 나눈다면 贊成은 消極的인 것과 積極的인 것을 合하여 全體의 6%에 不過하고 反對는 70%이며 「모르겠다」가 24%이다.

이러한 資料가 全體農民의 意思를 어느程度 代辯하여 줄지는 의문이지만 萬若에 大體的인 思考를 傳達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農民은 3町步 上限制의 撤廢에는 極히 少

數만이 贊成하고 大部分의 農民은 反對하거나 혹은 3町步 上限을 어떤 制約으로서 認識하지 않거나 그러한 문제에 關心이 없는 것이며 따라서 全體的으로는 上限制 撤廢反對論者의 見解가 正當한 것임을 反證해 준다고 하겠다.

이를 또한 階層別로 보면 意外로 大農階級에서 ③項에 同意하는 數가 壓倒的으로 많아 大農層이 事實上은 上限制에 대하여 別다른 制約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다른 特徵은 下部階層으로 갈 수록 贊成인 ①, ②項의 度數가 적고 ③項以下 특히 ⑤項 「모르겠다」가 急速히 增加하여 細農의 경우에는 41%가 「모르겠다」고 應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自營農規定에 대하여

새로운 農地法(案) 第2條(定義) ②項에 의하면 「自營하는 者라 함은 營農에 必要한 經費, 資材, 裝備 및 施設을 負擔하여 自己 責任下에 農業을 經營하는 者를 말한다」고 定義하고 있다. 이러한 自營農規定에 대하여는 그동안 都市資本의 農村誘致의 길을 연다는 贊成論者와 現在의 與件下에서 定義에서와 같은 自營農이 形成될 餘地는 결코 없으며 그것은 결국 不在地主를 公認하고 小作關係의 再生傾向을 促進시킬 것이라는 反對論者가 對立하여 왔다. 事實 政府에서는 當初 所謂「健全한」小作은 이를 陽性化시켜 公認하겠다는 方針을 밝힌 바도 있으나 이것이 많은 反對에 逢着하게 되자 經濟的인 機能은 同一하면서

<第VI-2表> 自營農 規定에 대하여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計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大農			2			6					1	3				1	1		10	71	3	22	1	7	14	100					
中農	1	4	4			17				4	9	5	3	1	3	2	1		6	11	3	6	32	59	10	19	3	6	54	100	
小農	1		6	6	5		9	1	1	2		3	12	5	2	1	6	5	1	5	8	1	2	24	36	24	36	12	18	66	100
細農	1	2	5	2	9	12	1	2			2	1	2	2	2	8	2	3	6	4	8	21	40	11	21	14	26	53	100		
計	3	2	17	12	14	44	2	3	6		15	20	9	5	6	11	14		4	14	7	8	48	7	48	26	30	16	187	100	

註：(設問) 새로 만드는 農地法에서는 과거에 직접 농사짓는 사람(自耕)만이 땅을 가질수 있던 것을 고쳐서 농사에 필요한 경비나 자재 장비 시설을 갖추고 자기 책임아래 농사를 경영하는 사람(自營農)에게까지 땅을 가질수 있게 하였는데

- ① 이제 농민은 살게 되고 농업은 발전하겠다.
- ② 별로 변동이 없을 것이다.
- ③ 그런 조건으로 自營農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 ④ 옛날 같이 지주나 다시 생기게 만들 말도 안되는 소리다.
- ⑤ 모르겠다.

도 自營農이라는 用語로 粉飾되어 登場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도 짙은 것이다.

이러한 自營農規定에 대하여 <第Ⅵ-2表>의 註와 같은 設問으로 조사한 결과 全體 187 戶中 積極的 贊成인 ①項에는 14 戶로 7%, 中立乃至 消極的 贊成인 ②項에는 8 戶로 4% 이며 消極的 反對인 ③項에는 87 戶로 47%, 積極的 反對인 ④項에는 48 戶로 26%이며 끝으로 「모르겠다」인 ⑤項에 30 戶인 16%로 應答이 나왔다. 따라서 이것도 贊反으로 나누어 본다면 贊成은 全體의 11%이며 反對가 73%이고 나머지 16%는 「모르겠다」이다. 即 自營農規定에 대하여 農民들은 約 1 割程度가 贊成하고 그 나머지는 大部分 反對하거나 또는 無關心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階層別로 特徵을 찾아보면 大農의 71%가 「그런 條件으로 自營農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에 同意하고 있는데 大農은 自營農을 할 사람의 立場에 가장 가깝고 또 相當 정도 規模의 營農者란 點에서 農業經營에 比較的 正確한 計算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大農階層은 贊成農家は 1 戶도 없고 全部가 自營農에 대하여 否定的이다. 中農, 小農 및 細農階層에서 各 各 6~11%의 農家가 積極的인 贊成을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興味있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과 같은 農業經營의 收支不均衡下에서도 自家勞動의 所得的 燃燒의 場으로서의 小作地에 대한 要求가 나타난 것, 따라서 小作關係는 이러한 條件下에서라도 擴大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解釋될 수 있다. 또 다르게는 現在의 小作條件이나 收畝가 등과 單純히 比較하여 보다 有利한 것이므로 이것을 積極的으로 選好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如何間 自營農規定에 대한 農民의 反應은 매우 否定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農地法上の 賃貸期間과 賃貸料規定에 대하여

새로운 農地法(案) 第 20 條는 1 項에서 賃貸借期間을 3 年以上으로 그리고 2 項에서 「賃貸料는 土地課稅基準調查法에 의한 基準收穫量에서 農地稅를 控除한 量의 2 割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안에서 定額制로 하되 特別한 約定이 없는 限 現金으로 支拂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現在 相當한 程度로 再生되고 있는 小作關係를 陽性化하여 小作人을 保護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憲法上에도 小作禁止條項이 設置되어 있거니와 小作關係의 清算을 骨子로 했던 農地改革의 20 年만에 새로운 農地法上에 過去의 小作法과 같은 小作保護規定이 再登場한 것은 明白한 農政의 後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如何間 法 第 20 條는 이와같이 極히 消極的이고 後退的인 外에 그 規定이 現在의 慣例나 實情과 지나치게 乖離되어 法の 實効性이 크게 疑問視되고 있다, 그래서 表의 設問과

같이 法 第 20 條 內容의 現實的 遵守可能性을 조사하여 보았다. 그 結果 ① 「잘 지켜질 것이다」에 同意한 農家は 全體 187 戶中 單 4 戶(2%)에 不過하며 ②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가 163 戶(87%)로 壓倒的이고 ③ 「모르겠다」가 20 戶(11%)이다. 階層別로도 커다란

<第Ⅵ-3表> 農地法上의 貸貸期間과 貸貸料規定에 대하여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計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大農		2		6				4			2				14	100			14	100
中農	1	6	2	16	1	2	18	1		6	1	3	6	46	85	5	9	54	100	
小農	1	15	3	10			20	2		13	2	1	2	58	88	7	10	66	100	
細農		12	6	15	1		3			15	1			45	85	8	15	53	100	
計	2	35	11	47	2	2	45	3		36	4	4	2	163	87	20	11	187	100	

註：(設問) 새 농지법에서는 망빌리는 기간을 3年 이상으로 하고 특히 망빌려주는 값(貸貸料)을 기준수확량에서 농지세를 뺀 量의 2割 以內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 ① 잘 지켜질 것이다.
- ②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 ③ 모르겠다.

差異는 없어 大農의 全部가 ②項(否定)에 同意하고 中農層의 若干이 잘 지켜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各 階層마다 모두 否定이 85%를 超過하고 있다. 이것은 現在의 慣行上 期間은 別문제로 하더라도 5割 以上의 貸貸料(小作料)와 現物收納이 普遍的이고 收買이나 雇只 外에는 거의 대부분이 定額制가 아닌 點에서 貸貸者의 立場에 가장 가까운 大農이나 賃借人이 될 中, 小, 細農 兩側에서 모두 同規定의 遵守可能性을 否定的으로 보게 된 것 같다.

4. 企業農의 可能部門에 대하여

企業農은 農地制度의 論議에 있어서 언제나 큰 比重을 占해 왔다. 그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韓國農業이 所謂 企業農 即 資本制의 農業으로 發展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그 背後에 強力히 潛在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農地法上에는 第 3 章(企業農)에서 企業農의 育成을 위한 廣範圍한 施策이 規定되어 있다. 그 施策에는 補助 및 融資와 國公有地의 貸付 또는 讓渡등이 包含되어 經濟的인 收支 均衡의 基準에서가 아닌 他目的으로 企業農이 簇出할 可能性조차 없지 않다. 그러나 經濟的인 判斷基準에 서는 限 아직도 企業農의 展開可能性에는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따라서 企業農의 展開可能性에 대하여 農民의 意見을 調查코자 하였는데 企業農問題는 事實은 그 內容이 모든 農民이 應答하기에 容易한 것은 결코 아니므로 <第Ⅵ-4表>의 設問

과 같이 多少 迂回的으로 可能部門을 調査하였다. 調査 結果에 의하면 ① 耕種農業部門에서 可能하다고 본 農家가 全體 187 戶中에서 10 戶(5%), ② 畜產 및 酪農部門 30 戶(16%)

<第Ⅶ-4表> 企業農 可能部門에 대하여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①	②	③	④	⑤	⑥	計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大農			2				2	1	3				1			2	1		1		1		1		—	1	7	3	22	—	6	4	4	28	14	100
中農	2	2	3				1	4	12	1	7	2	4	5	2	3	1	2		1	4	7	10	19	7	13	6	11	12	22	15	28	54	100		
小農	1	5	2	6	3		1	1	8			3	2	2	8	7	3	2	2	1	5	2	4	6	10	15	7	11	5	8	20	30	20	30	66	100
細農	4	1	3	9			2	1	13			1			2	2	4	6		2	2	2	4	9	17	9	17	1	2	6	11	26	49	53	100	
計	111		5	14	12		6	7	36	1	12	4	6	15	12	8	7	11	1	8	5	10	16	26	14	12	6	44	24	65	35	187	100			

註：(設問) 당신은 일꾼을 사서 농사를 짓고도 이윤이 남는 기업농이 다음의 어느 부문에서 계속 수지를 맞출수 있다고 봅니까?

- ① 耕種農業(米, 麥 등)
- ② 축산 및 낙농
- ③ 과수 및 원예
- ④ 기타 특용작물
- ⑤ 아무데서도 안될 것이다.
- ⑥ 모르겠다.

③ 果樹 및 園藝部門 26 戶(14%), ④ 其他 特用作物部門 12 戶(6%) 등으로 部門別로는 畜產 및 酪農과 果樹 및 園藝가 높고 其他特用作物과 耕種農業이 낮으며, ⑤ 「아무데서도 안될 것이다」가 44 戶(24%)이며 ⑥ 「모르겠다」가 65 戶(35%)이다. 흔히 企業農의 可能性問題는 서로 그 對象部門을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空虛한 贊反論爭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와 같이 部門을 細分하였을 경우 ①~④에 同意한 農家는 一旦 어느 部門에서든지 企業農의 可能性에 肯定的인 農家이며 ⑤가 積極的인 否定이고 ⑥은 無關心 또는 懷疑的인 것으로 事實은 否定쪽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러므로 企業農의 可能性을 이 表로부터 肯定, 否定으로 區分한다면 肯定은 全體의 41%이며 積極的 否定이 24%, 無關心 또는 懷疑的인 것이 35%로 大體로 4對6으로 된다. 이러한 數字는 設問에서 部門을 細分하여 하나의 部門이라도 肯定的으로 본 것은 모두 度數에 넣은데서 나왔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韓國農業의 全部門에 걸친 企業農의 可能性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며 그때의 數字는 훨씬 떨어질 것이다.

企業農問題는 그에 所要되는 資本, 土地面에서 中, 小, 細農보다는 大農階層에 關聯이 큰 問題인데 大農에 있어서 否定 또는 懷疑的인 ⑤, ⑥의 占하는 比率이 72%이며 이 中에도 44%가 積極否定인 것은 모든 大農이 全部 企業農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

라 할지라도 擔當可能한 階層이 企業農에 대하여 大體로 否定的이며 企業農으로의 轉換態勢도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5. 農地擔保 許容規定에 대하여

農地改革法은 農地の 擔保를 禁止함으로써 農民의 農地喪失을 消極的으로나마 保護코자 하였다. 따라서 改革以後 農地는 擔保能力을 잃게 됨에 따라 農地의 法律的인 抵當은 不可能하였으며 그 때문에 農村에 私的인 高利債나 系統金融의 延滯額이 累積되어 오면서도 반드시 그에 比例한 만큼의 農地喪失을 惹起시키지는 아니하였다. 農業金融이 正常的인 產業金融의 一環으로서 農業經營을 通하여 獲得하는 利潤中에서 利子를 支拂할 수 있다면 農地의 擔保는 勿論 制限한 必要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農業이 低農產物價格政策 등으로 利潤은 커녕 生産費의 補償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여 왔기 때문에 지극히 消極的이지만 農地擔保의 制限이 農民을 위한 政策일 수 있었다. 그런데 近來 部分的으로는 農民上位階層의 要求도 있었겠지만 大部分은 金融 供與者의 立場에서 長期性資金의 貸付에 必要하다는 名目下에 農地擔保의 制限撤廢를 強力히 要求하게 되었고 그것이 1966年에 農地擔保法의 制定으로 나타났으며 이번의 新農地法에서 同法을 廢合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農地擔保의 無差別的 許容에 대하여는 農地改革法 制定當時와 比較하여 不利한 農業의 條件이 何等 改善되지 않고 그 때문에 擔保의 否定的 要因이 尙存한다는 根據에서 그동안 많은 反對論이 擡頭하였다. 그리하여 農地擔保 許容에 대한 農民의 見解를 調査한 것이 <第Ⅵ-5表>이다. 表에 의하면 全體 187戶中 ① 肯定이 119戶(64%)이고, ② 否定이 48戶(26%)이며, ③ 「모르겠다」가 20戶(10%)이다. 階層別로는 大農이 肯定 78%로 가장

<第Ⅵ-5表> 農地擔保 許容規程에 대하여

	貫永里			木里			回陽里			興洞			全體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①		②		③		計	
													戶數	%	戶數	%	戶數	%	戶數	%
大農	2			3	1	1	4			2	1		11	78	2	15	1	7	14	100
中農	5	3	1	7	7	3	13	7		6	1	1	31	57	18	34	5	9	54	100
小農	9	9	1	6	3	2	17	6		13			45	68	18	27	3	5	66	100
細農	6	5	7	11	3	2	2		1	13	2	1	32	60	10	19	11	21	53	100
計	22	17	9	27	14	8	35	13	1	34	4	2	119	64	48	26	20	10	187	100

註：(設問) 새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담보(擔保)를 허용하고 있는데

- ① 농지를 담보로 용자를 해주는 것은 잘된 일이다.
- ② 농지를 담보로 하게 되면 농민이 땅을 잃을 염려가 많다.
- ③ 모르겠다.

積極의이며 中農은 肯定 57%, 否定 34%로 가장 消極의이다. 그리고 細農은 「모르겠다」가 21% 이면서도 肯定이 60%이다.

果然 調査對象 全體農家中의 64%가 擔保의 許容을 肯定하고 그것이 小, 細農에 있어서도 各各 68%, 60%로 相當히 높은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農民들은 아직도 日帝下에서 高利貸와 農地의 擔保(抵當)를 通하여 日本人 또는 韓人 地主들이 農地를 收奪하던 經驗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면서도 이러한 見解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첫째 現在의 農協 등 系統農業金融의 規模가 過少하여 營農資金의 不足이 深刻한 것, 둘째 農民에게 있어서 거의 唯一한 資產인 農地가 擔保能力이 없는 데서 오는 私金融을 包含한 借入의 不便, 셋째 後日에 農地를 喪失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自拋自棄등에 基因하는 것 같다. 어쨌든 營農資金의 不足에 대하여 現在와 같은 連帶保證式 融資方式의 擴大要求로 方向을 設定, 貫徹하지 못하는데서 오늘날 農民運動의 無에 가까운 低調相을 엿볼 수 있거니와 農民이 스스로 農地擔保의 許容을 6割 以上이나 또 階層에 關係없이 要求하게 된 現實은 눈물겨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VII. 結 語

지금까지의 考察을 通하여 살펴 본 農地所有에 關聯된 農地改革後 20 年間의 變動結果를 要約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階層別 또는 營農種別(階級別) 變動狀況을 보더라도 上位階層으로의 上昇變動이 比較的 活潑했으면서 보다 크게 下降運動이 이루어져 農民의 零細農化, 脫農民化를 加速化하였으며 農地改革直後에 크게 늘어났던 自作農의 構成比가 줄어들고 自小作과 地主階級이 增加하여 小作關係가 再生되는 歷史的인 退行現象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賣買에 關聯된 變動을 보더라도 賣却에 있어서 賣却理由는 그 70%가 否定的인 것이고 賣却率은 近來 漸次 높아 지고 있으며 賣却希望은 上位階層일 수록 크며 그 理由도 또한 否定的인 것이 80%를 超過하고 子孫에 대한 農事의 계속 希望은 12%에 不過하며 나머지 88%가 希望하지 않았다. 買入은 買入者가 貸地人인 경우가 全體의 9.8%이고 貫永里와 金海邑 興洞 등 都市近處는 17.9%와 11.6%의 무시 못할 比重을 占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特徵이고 買入資金은 거의 大部分이 自力資金으로서 金融機關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地主小作關係는 4個地帶 全體 11.1%, 3個地域에서는 12.6%의 規模

로 調査되었지만 實際로는 그보다 클 것으로 推測되며 地主에는 商人이 많고 親戚 乃至 知人이 大部分이며 따라서 地主에 대한 態度는 中立 또는 好意的이면서도 小作料는 現在 現物로 收穫量의 5割以上이었다. 移出農家 및 그 移出行態에 있어서는 經營地의 減少와 離農과가 密接한 相關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었고 移出原因은 若干의 非經濟의 事情에 의한 都市 移轉을 除外하면 거의 모두가 農業과 農村에 대한 否定으로서 移出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移出地는 大部分이 都市 特히 大都市가 많으며 3次産業部門등에의 就業이 가장 많고 다음이 農業으로서 바람직스러운 鑛工業部門은 微微하였다.

끝으로 農地法案의 主要規定에 대한 反應은 3町步上限制의 撤廢에는 極히 少數만이 贊成하고 大部分의 農民은 反對하거나 無關心하며 自營農規定에 대하여 全體農民들은 1割程度가 贊成하고 나머지는 反對 또는 無關心하고 階層別로도 大農의 93%가 否定하였다. 그리고 小作의 陽性化를 前提한 賃貸期間 및 賃貸料의 制限規定에 대하여는 그것이 現行慣例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것이어서 農民들은 그것이 遵守될 可能性을 1割정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企業農可能部門은 可能部門을 細分하여 어느 한 部門이라도 可能하다고 본 것을 肯定인 것으로 했을 때 肯定은 約 4割이며 大概 論議의 焦點이 되는 耕種農業部門에 대한 可能性은 5%에 不過한 것으로 나타났다. 農地擔保의 許容規定은 6割以上이 肯定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反應에는 檢討되어야 할 많은 問題를 안고 있는 것이었다.

以上에서의 諸般 考察을 土臺로 하여 韓國 農地制度의 現在 및 將來를 생각 할 때 몇가지의 根本的인 再檢討를 要하는 問題들이 指摘될 수 있다.

첫째, 3町步上限制의 撤廢論爭에서 贊成論者의 見解였고 大部分 그대로 新農地法을 支配하고 있는 3町步制限 撤廢—農地擔保許容—都市資本誘致—企業農 育成式의 思考方式의 再檢討이다. 特殊한 幾個部門에서의 企業農의 展開可能性이 全적으로 否定되는 것은 아니지만 上記調査에서와 같이 事實上 가장 關係가 깊은 大農의 72%가 可能性을 否定 또는 懷疑하고 있고 耕種農業部門에 대하여는 不過 5%만이 可能性을 認定하고 있는 바탕위에서 特殊部門의 若干의 展開可能性을 全部門에 擴大함은 部門間에 混亂을 惹起하고 그릇된 結論으로 이끌기 쉽다. 따라서 企業農을 發展의 主軸으로 한 農地法의 思考는 現在와 같은 農業을 圍繞한 條件이 改善되지 않는 限 根本적으로 再檢討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 結實없는 支援에 의한 國家資源의 浪費와 農民의 희생만이 強要될 우려가 크다.

둘째, 農業 및 農村의 實情과는 相當히 거리가 먼 自營農規定이라든지 小作保護立法的

性格을 띤 賃貸期間 또는 賃貸料의 制限規定 등은 企業農主軸式 思考가 지나치게 飛躍的인 立場에 反하여 이것은 또 지나치게 消極的이고 時代逆行的인 것이므로 小作陽性化—保護보다는 그것을 強力히 抑制하는 方向으로 될이 보다 妥當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農地制度의 方向은 적어도 耕種農業에 있어서는 現在의 條件下에서 그 發展可能性이 稀薄한 企業農을 無理하게 支援하기 보다 꼭같이 農業의 資本制的 發展을 目標로 하더라도 段階的으로 우선 着手可能한 協業農을 誘導하는 것이 經營規模의 擴大는 물론 現在 不足一路에 있는 農業勞動力 問題, 機械化를 통한 生産力 增大문제를 解決할 뿐 아니라 小作地의 協業體에의 寄託을 통한 小作關係의 弊害도 防止할 수 있는 길로서 今後 農政이 追求해야 될 方向인 것으로 생각된다.

{ 筆者 서울大學 校 商科大學 }
{ 韓國經濟研究所 補助研究員 }
{ 서울大學 校 商科大學 助教 }